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박창현·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저 자 박창현, 김근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0-07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립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80-7 93370



•• •• 머리말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으로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목표를 촉진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18년 10월 공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제시된 주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2019년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매뉴얼,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2021년도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그동안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추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연구진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 해주신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참여해 주신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분들,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 목차

요약	 1
I .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27
3. 연구방법	27
4. 연구의 한계점	
5. 선행연구	31
Ⅲ.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현황 및 법제도	35
1. 관련 정책 및 현황	37
2. 관련 법령	47
Ⅲ.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83
1. 공영형 유치원	85
2. 협동조합형 유치원	95
3. 매입형 유치원	···· 108
IV. 정책 제언	133
1. 정책 방향 및 과제	135
2. 정책 방안 및 전략	···· 138
참고문헌	 145
부록	- 147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매입형 유치원)	147
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공영형 유치원)	150
부록 3.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협동조합형 유치원)…	153

•• •• 표 목차

⟨⊞ -3- 1⟩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질문지 내용 예시	28
〈丑 -3- 2〉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일시, 안건 및 참석자	29
⟨⊞ -3- 3⟩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	30
〈丑 -3-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시, 안건 및 참석자	31
⟨⊞ -1- 1⟩	공영형 유치원 현황	40
⟨⊞ -1- 2⟩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45
⟨표 Ⅱ-1- 3⟩	매입형 유치원 현황	46
⟨표 Ⅱ-2- 1⟩	유치원의 설립	48
⟨표 Ⅱ-2- 2⟩	유치원운영위원회	49
⟨⊞ -2- 3⟩	유치원규칙	·· 51
⟨표 -2- 4⟩	교직원	52
⟨표 Ⅱ-2- 5⟩	무상교육 및 유치원 원비	53
⟨⊞ -2- 6⟩	지도·감독 및 평가	54
⟨⊞ -2- 7⟩	교육과정 및 생활기록부	54
⟨표 Ⅱ-2- 8⟩	유치원회계	55
⟨⊞ -2- 9⟩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57
⟨⊞ -2-10⟩	사립유치원 이사회	59
⟨표 Ⅱ-2-11⟩	사립유치원 임원	60
⟨표 Ⅱ-2-12⟩	사립유치원 회계	62
⟨표 Ⅱ-2-13⟩	사립유치원 재산	64
⟨표 Ⅱ-2-14⟩	사립유치원 재산 및 회계	66
⟨표 Ⅱ-2-15⟩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67
⟨⊞ -2-16⟩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68
⟨표 Ⅱ-2-17⟩	협동조합의 정의	69
⟨표 Ⅱ-2-18⟩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70
⟨표 Ⅱ-2-19⟩	협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총회	73
⟨표 Ⅱ-2-20⟩	협동조합의 이사회	74
⟨⊞ -2-21⟩	협동조합의 임원	75
⟨⊞ -2-22⟩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77
⟨⊞ -2-23⟩	협동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78

⟨⊞ -2-24⟩	사립유치원 회계
⟨∄ -2-25⟩	사립유치원 재산80
⟨∄ -2-26⟩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 소유주체81
⟨표 Ⅱ-2-27⟩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81
⟨∄ ∭-1- 1⟩	심층면담 사례: 대구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사롄86
⟨∄ ∭-1- 2⟩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89
⟨∄ ∭-1- 3⟩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cdots 91
⟨∄ ∭-1- 4⟩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안할 점93
⟨∄ ∭-1- 5⟩	공영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94
⟨∄ Ⅲ-2- 1⟩	심층면담자료: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사례97
⟨∄ Ⅲ-2-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100
⟨∄ Ⅲ-2- 3⟩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103
⟨∄ Ⅲ-2- 4⟩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105
⟨∄ Ⅲ-2- 5⟩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07
⟨∄ Ⅲ-3- 1⟩	심층면담: 경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례110
⟨∄ Ⅲ-3- 2⟩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117
⟨∄ Ⅲ-3- 3⟩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121
⟨∄ Ⅲ-3- 4⟩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127
⟨∄ Ⅲ-3- 5⟩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131

요약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이하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정부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18년 10월)' 중 하나로,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어 국공립유치원 이용율 40% 확충 정책에 기여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
- □ 이상의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진은 국공립 다양화 정책 시행을 위한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음.
 - 연구진은 2019년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매뉴얼,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매뉴얼(이하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3종 세트)을 개발하 였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정책의 환류)을 통해 해당 매뉴얼들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왔음.
- □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3종 세트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나은 매뉴얼을 구성하고, 정책의 지속과 환류를 반영하여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시도의 사례 예시를 매뉴얼에 포함하고, 기존의 매뉴 얼의 내용을 보완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함.
 - 공모부터 최종 선정(일부 운영)까지의 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 및 성 공사례를 발굴하여 새 매뉴얼에 포함하고자 함.
-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 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지침서(매뉴얼)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추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나. 연구 내용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시도 및 현장 사례 분석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시도 및 현장 사례를 선정 공모부터 최종 선정(일부 운영)까지 과정 등을 분석하였음.
- □ 국공립 다양화 정책 매뉴얼 수정·보완 내용 추출
 - 국공립 다양화 정책 운영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정책 추진을 연구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음.
- □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안
 - 국공립 다양화 정책 시행시 어려움과 선결과제 등을 분석하여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보완하고 지원하였음.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본 연구에서는 전국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 내부자료, 국책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음.

□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분석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사례 각각 1개원 선정(유치원 표집은 교육부 추천을 통한 목적 표집 방식)하여 해당 유치원을 담당하는 시도 업무 담당자들을 심층면담을 하였음.
-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국공립 다양화 유치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성공 또는 실패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선 방안과 매뉴얼에 담을 내용, 구체적인 사례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정책을 추진할 때(공모, 선정, 운영 등) 경험했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 사례, 2021년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정책건의사항, 국공립 다양화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질문을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질문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는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시행하는 17개 시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0년 12월 2일에서 17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전문가 자문회의 3차를 모두 진행하였음.
-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공영형 유치원 8개원 대표와 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 교직원, 부모대표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요청하 였으며,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각각 1회씩, 모두 2차의 서면 자문을 진행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방향 설정, 면담 내용 구성, 정책 시사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 가 및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 최하였음.

2.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현황 및 법제도

- □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전국에 총 8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4개원, 대구 2 개원, 광주, 강원이 각각 1개원 운영되고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현재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개원이 운영되고 있음.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현재 35개 운영되고 있음.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개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이 3개 원, 경남이 2개 원, 울산과 광주가 각각 1개원을 운영하고 있음.
- □ 임재홍, 강남훈, 김용석, 김진석, 박창현(2015)의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최은영, 박창현, 송신영(2016)이 실시한 공공형 유치원에 대한 연구,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의 사립유치원 공공 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박창현, 김근진, 이 재희, 조혜주, 이유진 외(2020)의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연구, 박창현, 이덕난, 이솔미(2020)의 공영형 유치원 성과분석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참조하였음.

3.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가. 공영형 유치원

1)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서울의 경우, 개방이사의 문제보다 법인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공영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되는 5년 후에 원아 이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 종교법인이 많은데, 종교법인에는 개방이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 - 유치원 현장 실사 중 유치원 시설이 현행 기준에 부적합하여 공영형 선정에서 제외 대상된 사례가 있었음.
	대구	- 사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개방이사 및 이사회 구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개방이사는 추천하면 되지만 이사 요건 까다롭고, 이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 어서 이사회 구성 어려웠음.
	강원	- 강원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강릉에서 원비가 가장 낮은 유치원이 되었음. 그러나 2020년 2월 사업 종료 이후 원비 인상으로 인해 유치원과 학부모들 간 갈등 예상
	광주	 -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개념 및 관련 정보가 유치원에도 공유가 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기대와 이해의 격차가 커서 갈등이 발생함.
비추진	경북	- 경북은 현재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교 3년 한시지 원 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가 부담되어 사 립유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대전	- 2018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추진하였고, 1개원을 추천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음. - 법인 전환 후 폐원하거나 매각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 유치원들이 많음.

2)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서울	 업무 담당자의 매뉴얼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공영형 유치원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의 매뉴얼이 필요 법인 전환의 의미,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이 안될 경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
추진	대구	 유치원용 공영형 유치원 운영 매뉴얼이 필요 매뉴얼의 내용들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꼭 필요한 지침들로 구성할 필요 3개월 안에 법인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전환에 10개월이 걸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이 필요
	강원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광주	- 재약정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 필요
비추진	경북	-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의 문의 사항 등을 요약하여 정리할 필요

3)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 안할 점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수익용 기본재산의 출연 문제에 대하여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예외 규정 신설하거나, 최소한의 비율로 하여 규제 완화 필요
	대구	- 당해년도 약정 시 지원하였던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3년동안 지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강원	- 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포함될 필요
	광주	- 사업의 지속성 부분까지 명확하지 않음. 3년 이후 재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나올 필요가 있음.
비추진	경북	-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분리되어 정확한 기준으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야 함.
	대전	- 참여를 유치원들은 많으나, 정책 이해도가 낮으므로 적극 홍보를 해야 함. - 약정 종료 시점인 3년 후에 대한 정책이 보다 명확하기를 기대

4)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정체성에 대하여 학부모, 사립유치원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대구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해야 함.		
	강원	- 3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예산 지원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광주	- 향후 공영형 유치원 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		
비추진	경북	- 특교 지원의 다양화 및 특교 기간의 연장이 필요 -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유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5) 공영형 유치원 정책: 대구 사례 심층면담 결과

- 공영형 유치원 반대 여론 줄이기
- 법인 전환에 대한 매뉴얼 상세화 필요
- 법인화 이후 공영형의 지속가능성 보장 필요
- 개방이사 추천은 교육청과 유치원 상호인력풀을 활용
- 친절한 매뉴얼 만들기: 매뉴얼 양식에 예시 구문 포함하기

- 약정 기준에 특수학급 제안에 따른 정책의 현실화 필요
- 교직원의 노동조건 강화
- 건실한 종교법인에는 개방이사제도를 유연하게 적용
- 장학사(관) 중심으로 협력하는 조직문화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1)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 던 사례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설립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 관련 업무를 지원청에 거의 권한을 위임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경기	 교육청의 입장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제한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해야 함. 공동육아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 간의 간극 해소 필요 협동조합이 아니라 유치원 설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함. 자가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양적인확대가 아니라 질적 내실화가 더 필요 	
추진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 신설한 유치원에서는 부관 설정을 통한 원장 자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할 필요 -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경북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 교육청과의 소통이 어렵고, 운영자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운영이 어려움 수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 학부모 조합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실질적인 운영 불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과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설립 비용이 무엇보다 중요
비추진	울산	- 현재는 운영하는 원은 없으나 문의가 있는 상황	

2)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겸직 여부에 대한 내용 반영이 필요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추진	경기	 유치원 설립을 신청한 모두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 계획서 신청 전 교육환경평가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 설립계획서 신청 시 법인과 조합의 재산 운용방식이 다르므로 재산 명세 및 재산 확보계획서 양식을 조합에 맞게 수정할 필요 설립인가서 신청 시 조합 출자금, 조합비 등 예산 재원에 따른 예산서 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관공서 임대 설립일 경우, 교사·교지에 대한 필요 서류들이 보완되어야 함. 사회적협동조합만 만들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 교육과 법인운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은 원장과 교사가 담당하고, 조합 운영은 학부모가 해야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
	경북	- 학부모 주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위한 조합 결성 추진 시 컨설팅과 연수가 반드시 필요
비추진	울산	- 쉬운 용어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러 권으로 나누어 그림 동반이 필요

3)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체될 경우를 대비해 재원생의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이 -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컨설팅이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추진	경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협업 매칭이나 공모를 통해 임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초기 설립 비용 부족 해소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이 필요 조합 설립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 사립, 유치원, 협동조합의 3가지 층위를 아우르는 센터가 필요 초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시스템이 필요 			

구분	시도	내용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 재정지원, 컨설팅, 교육의 근거가 없으며, 조례 및 시행 규칙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공공기관 임대의 경우에도 영구임대가 아니므로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 공공기관 임대 TO 확보, 대출지원제도 확대, 컨설팅 확대 등이 절실하게 필요 					
	경북 - 유아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홍보기						
비추진	울산	 유치원, 교육청의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연수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에 연수를 해주기를 바람. 					

4)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모든 시·도 교육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수 등이 필요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 공공기관 임대를 공고해주는 방법 등이 있어야 협동조합형 유치원 시도가 가능 - 지원조직과 컨설팅 및 연수체계가 선제되어야 함.			
	경북	-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에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초기 설립 시 공영형 지원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칫 운영자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음.			
비추진	울산	- 교육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17개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컨설팅을 해0 울산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련자가 모여 협의회도 필요. - 먼저 운영해 본 시도의 사례 발표도 들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추진			

5) 협동조합형 유치원: 경기 사례 심층 면담 결과

□ 공동육아와 공동체 의견

- 매뉴얼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므로 유치원위원회를 자문기 구로 수정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이 2020년 3월에 개정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자 운영에 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
- 유치원 원장들의 협조 통해서 사례 추가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02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자료, 202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을 참조하

- 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뿐만 아니라 공영형 유치원에서도 법인이사회 역할과 유 치원운영위원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음.
- 자격을 갖춘 원장이 조합 출발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음.
- 부록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 정관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요함.
- 협동조합은 부모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유치원 운영은 장학사와의 관계가 중 요함.
- 매뉴얼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재원을 출자금과 조합비로 구성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에 대한 내용은 설립 파트에 들어가야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반모임 대표를 삭제하고 협동조합 임원은 학부모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함.
-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 경기도 화성오산지원청 업무 담당자
 - 교육청-지자체-설립자 간의 협력 필요
 - 유치원 설립 인가 시 어려움: 대출, 인가 기준에 관한 인식 부재, 서류 보완 부족
 - 공공기관 임대 규정으로 인한 행정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 취학권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가 가능
 -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 필요
 - 유아모집 규정 예외 필요
 - 공영형 유치원 지원 안내 삭제 필요
 - 교육환경평가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점도 기술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마을공동체 사업을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연결하는 것도 대안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1)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사립유치원 시설 규모가 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하여 매입형 유치원의 공립전환후 민원이 발생. 시설공사(기간, 추가 개·보수 등)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 공유지분인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단독으로 못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 - 공립기준에 맞는 규모의 유치원을 구하기 어렵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용여건및 시설여건 등 기준에 미흡한 유치원들이 점차 많아짐. - 건물의 용도가 섞여 있는 경우는 미선정하는 것을 원칙 - 학부모들의 동의와 사전협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 감정평가 절차를 앞으로 당기는 것도 필요				
	경기	 경기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추진 기조 또는 목적은 단설유치원 부족 지역, 공립 취학율 낮은 지역, 단설유치원 용지 확보 어려운 지역에 공립선호도 등을 고려한 배치여건과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단설유치원이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 매입형 유치원을 많이 선정 평가 항목의 배치와 시설여건 고려 시 특히 배치여건을 더 중요하게 판단 설립자가 학부모 반대로 선정과정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학부모반대는 학부모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음. 철회한 다른 1개 유치원은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확약 체결 시점에서 포기한 사례 경험상 행정절차 진행 전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깔끔. 신청을 철회한 유치원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 차년도 신청자격을 박탈 고정시설물 포함해서 매입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비용 반영을 안 하고 있음. 건물 안에 학원, 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청 시부터 제외, 단독건물 동일 소유주는 올해는 신청을 받아주었는데, 공동명의는 제외 				
	부산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시설이나 입지가 양호하지 않은 유치원을 선정하게 되면, 유치원 구성원들의 불 만이 높음. 교실 면적이 안 나와서 정원을 적게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설립자가 선정과정에서 중도 포기해서 학부모 민원 발생, 이런 이유로 협약 체결 시 구속력이 필요 				
	경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적 편차가 발생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탈락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 대한 신뢰 훼손,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 매입 이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파손 등의 유지보수비로 인하여 과다 유지보수비 발생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 선정 예정 유치원의 중도 포기로 인해 매입 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감소, 후순위후보 유치원 선정이 필요해지는 등의 사례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의 고용문제 미해결로 인한 민원 발생 				

구분	시도	내용			
	광주	 교육청이 선정한 2개원 중 1개원에 대해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실외체육장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문제, 대피로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되어 최종 1개원이 선정 개원 유치원으로 시설적인 문제는 크게 없었으나, 교사 변경에 따른 재원생 학부 모들의 반발이 있었음. 교직원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사례 			
	울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1개원 선정을 취소한 사례 모집공고에서 운영 뿐 아니라 폐원한 유치원도 포함하여 진행. 모집공고에서 폐원한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음. 기존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을 승계, 공립유치원으로 학급편성 시 시설여건 기준으로 학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 			
	전북	 유아 인구수가 지속적 감소, 특히 만2세 이하 유아 수가 급감, 도시개발구역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이외에는 공립유치원 신설 수요가 크지 않음 2022년 이후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국정과제 목표인 40%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도내 사립유치원 여건상 공립단설유치원과 비슷한 규모(부지면적, 교지면적 등)의 사립유치원이 없음. 사립유치원 매입비 외에도 특수학급·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측 폐원 및 소규모 유치원의 문제가 더 심각 			
.ul=.rl	대전	- 타시도 사례 추진상의 부작용(고용승계, 추진과정 상 매입가격 등 불만, 매매계약 기준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부재, 행재정적 낭비, 선정기준 및 공정성 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			
비추진	강원	 강원지역 특성상 소규모 유치원 비중이 높아 매입형 유치원 기준에 맞는 유치원이 부족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통학로에 개인 사유지, 농지가 섞여 있는 유치원들이 많아 매입형 유치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많음. 			
	경북	- 선정 기준에 적합한 유치원은 10개원에 불과 - 취원대상이 수 감소했기 때문 - 미선정 사유에 대해 또 다른 민원·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진할 타당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근거가 부족			
	대구	-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여 단설 신축과 비용 차이 거의 없기 때문 - 학부모 반대 및 내부 조정이 어렵기 때문			
	인천	- 원도심의 유치원들의 운영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편, 안전문제 및 리모델링 과다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2)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매입형 유치원 교실 최소기준을 필요 - 안전진단보고서에 관한 매뉴얼 안내 필요				
	경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감정평가 금액 등의 불만족 사유로 철회 시, 패널티 부분을 매뉴얼에 강조할 필요 매입형 유치원 신청시 학부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매뉴얼에 담을 필요 				

구분	시도	내용				
	부산	 중도포기 유치원 제재 근거 마련(협약사항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대지권 비율 유치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공유부지에 대한 사권 기준 완화(행안부 협의 과정 필요)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 매입형 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개정 희망) 시설 리모델링 예산도 교부금에 포함하여 교부 				
	경남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 예시 매입 계약서 작성에 따른 표준 계약서 예시 기존 매뉴얼의 내용 중 확약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중도포기 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중도 포기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광주	- 매입형 유치원의 식기류, 에어컨 등 사용가능한 비품 구매 절차 방안 마련 필요				
	울산	- 평가 이후, 매입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사업 철회를 할 경우, 이를 제재 및 규제 근거 필요				
	전북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사례 예시(모범사례, 문제점 등) 등이 포함될 필요				
비추진	대전	- 매뉴얼에는 시도별 시행착오, 시행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개별 사례 중심의 해소사례 등이 포함될 필요, 매입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시설 면적 기준도 제시 필요				
	강원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무실, 행정실 등 관리실 부재로 여유 공간 여부 확인하거 나, 증축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				
	경북	- 교부금 지급 기준을 명시할 필요				
	대구	- 매뉴얼에는 교부금 재원의 명확화, 우수 사례 예시, 평가 서식의 (실제 배점표 등) 구체화가 필요				

3)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매입형 유치원 공모 자격 확대에 관한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 필요 - 매입형 유치원 매입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 교부를 요청				
추진	경기	 매입형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 절감과 짧은 기간 안에 공립유치원 설립을할 수 있다는 점임. 매입 유치원의 놀이시설, 입목죽, 시설 리모델링비 등의 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하여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교부금 반영 시 리모델링비도 포함 필요 				
	부산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중도 포기유치원에 관한 제재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설립자 소유 부지 내 분리된 건물 및 대지권 비율 유치원에 관한 매입형 유치원 선정 근거를 마련 				

구분	시도	내용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 완화할 필요 기존 유치원 교직원 고용 승계 문제,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필요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이 필요함. 매입형 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필요 				
	경남	 매입 이후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교육부 자문 시 자문 의견 제시가 아닌 매입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결과가 필요 매입형 유치원 접수 시, 학부모 동의서 및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등 학부모, 교직원 동의서가 있어야 매입형 유치원 접수가 가능케 할 것을 제안 매입 건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 선정 이후 중도 포기 유치원, 전년도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제재방안 검토가 필요 휴원 중인 유치원도 매입가능하게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음 작년에 공모 신청했던 유치원이 입지가 좋아서 선정하려고 하니 특혜 의혹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광주	-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팔고, 매매 후, 타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음.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유치원을 매매한 설립 자의 경우, 향후 몇 년간 사립유치원 설립 및 매매 금지조항 필요				
	울산	 유치원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토지가 있다면, 시도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고 매입 금액에 대한 교부가 필요 특수학급을 매입형 유치원에 포함하려면 리모델링 등에 대한 금액교부 필요 				
	전북	- 추진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철회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				
비추진	대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교사, 체육장 등 기준면적 협소) 할 필요 리모델링 등 매입형 유치원 추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강원	-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기능을 단순 자문이 아니라 승인 등의 기능으로 변경 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기능 다양화가 필요				
	경북	- 학부모 만족도, 실제 매입한 지역의 취원율 증가 결과 등 우수 사례(실제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 필요				
	대구	- 매입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목죽, 외부 주차장 등)임에도 교부금에서 제 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				
	인천	- 매입형 유치원을 실제 운영시 그 성과 및 학부모 만족도를 발굴할 필요				

4)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개발사업자 기부채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설립모형 검토 중이며, 교육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분원'형태의 유치원 법제화가 필요				
一七		- 공영형유치원의 경우, 현재 법인+개방이사(과반수 선임) 규정을 법인+개방이사 (3분의 1이상 선임)으로 개선하고자 함.				

구분	시도	내용				
		- 유치원만을 설립·경영하려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하도록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제1 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함.				
	경기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등 운영사항 등을 적극적 수용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인가권역 충족과 관련되어 실질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선제되어야 함.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 확충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면, 향후 인가권역 예외 규정 등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 교육부 교부금 기준을 교지 안의 시설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부산	-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이 선제조건				
	경남	- 매입 이후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문제 해결이 필요 -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수요가 높은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적어 사립 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유인책 필요				
	울산	- 교육부가 시도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매입형 유치원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				
비추진	전북	- 유아 수가 급감하는 지역에서는 설립보다 폐원, 소인수학급 등이 더욱 심각한 문 제로 대두				
	대전	 유아 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이 더 많아지는데 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기 설립된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다양화보다도 유아모집 확대,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원도심 지역의 소인수 유치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인수 유치원 활성화 방안,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방과후 돌봄시간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고민이필요 기 선정된 유치원도 평가에서 통과될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강원	- 지금까지의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만족도 혹은 성공사 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경북	- 유치원을 사업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유치원은 매입형으로 추진하기 보 다 폐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5) 매입형 유치원: 경기 사례 심층 면담 결과

-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정책임.
-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학부모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하도록 함.
-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폐원 유치원은 제외하도록 함.
- 교실 확대 리모델링은 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가능함.
- 중앙투자심사 기준의 변화: 100억에서 300억으로 변경, 매입형은 자체투자

심사에만 해당할 가능성 높음.

-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교재교구 승계 부분은 매뉴얼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매입형 유치원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협력 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입형 유치원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시 유아의 학습권 고려가 최우선이어야 함.

4.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및 과제

- □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공영형 유치원 시행 이후,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원비 절감 효과를 부모들이 체감했다는 것임.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방향은 법인 전환의 어려움 해소, 개방이사 및 이사회 구성의 문제 조정,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시 시설 조건 확인,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 등을 보다 고려해야할 것으로 파악됨.
 - 시·도교육청에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비추진하는 이유는 특교 3년 한시지 원 이후 교육청과 유치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유치원의 법인 전환 후 폐원이나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꺼려하기 때문임. 또한 사업 종료 이후의 재선정과 재정지원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가능성 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이에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사립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기초를 닦는 작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 유치원을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공공의 미래학교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유 치원이므로, 아직 유치원 운영에 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 설립 초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초기 대출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세운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임대유치원을 운영하는 구조는 유치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함.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유치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조합 법인의 운영과 유치원 교육의 분야가 적절하게 분리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적 운영가능한 구조임.
- 원장은 조정자의 입장에서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유치원 설립인가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발기인에 반드시 부모와 교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를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들로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운영에 차질이 없게 됨.
- 공공기관 임대에 필요한 행정서류들의 보완, 조합 출자금과 조합비와 같은 예산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일반 유치원과 다른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예컨대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해체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업무 담당자 연수와 이해 교육이반드시 필요함.
- 초기 설립자들은 사협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컨설팅 계획이 필요함. 결국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설립인가 시 교육관과 재정 보유 현황 등에 관한 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임. 단설유치원 수요가 있음에도 위치와 비용의 측면에서 불가능할 때,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시,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매입형 유치원의 목표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공립유치원 이 용률을 높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하고, 시설공사의 기간과 개보수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유아와 교사가 승계되지 못하는 불만이 나타나기도 함.

- 매입형 유치원을 진행할 때, 유치원 구성원들의 합의 또는 사전협의가 반드 시 필요하며, 이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입형 유치원을 진행하는 도중, 감정평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중도포기하는 설립자의 경우에 패널티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시 과정과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감사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선정 시 감사이행 결과를 충분히 모니터링하는 과정 을 통해 감사관 도입의 효과를 도출해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시 단독부지 단독건물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에 따라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매입형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교재교구, 교직원 승계가 불가하며, 매뉴얼에 이러한 지침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는 시도는 소규모 유치원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성 시비,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민원, 고용승계, 리모델링시 교부금 지원의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음

나. 정책 방안 및 전략

- 1)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방안
- □ 정책방안 1.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허들을 낮추기
- ① 추진전략 1-1. 법인 전환에 대한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매뉴얼 상세화 필요
 - 법인화 기간, 법인 전환시 필요한 서류,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1-2.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예외 규정 신설 필요
 -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3개년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입 총액의 2분의 1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해야하므로, 유치원만을 설립·경영하려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함.
 - 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임.
- ③ 추진전략 1-3. 개방이사 추천은 교육청과 유치원이 상호인력풀을 활용하며 시행

- 교육청과 유치원이 상호 협력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 적합한 이사를 선임 하여 유치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정책방안 2. 교직원 노동자성 존중과 근무여건 개선
- ① 추진전략 2-1. 교직원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8시간 근무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매뉴얼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음.
- ③ 정책방안 3. 교직원 노동자성 존중과 근무여건 개선
- ① 추진전략 3-1. 교직원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8시간 근무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매뉴얼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음.
 - ④ 정책방안 4. 유치원용 매뉴얼 개발 및 매뉴얼 서식의 예시 포함
- ① 추진전략 4-1. 유치원용 매뉴얼 개발 필요
 -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유치원들의 참여와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유치원용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5 정책방안 5. 부서 협력 구조 관련
- ① 추진전략 5-1. 관련 부서의 협력을 높여 공영형 유치원 사업 추진을 내실화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시도교육청 내 여러 부서의 협력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관련 부서의 협력을 높여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 들 필요가 있음.
 - 6 정책방안 6. 정책 홍보
- ① 추진전략 6-1. 공영형 유치원 정책 홍보
 - 공영형 유치원의 개념, 특성, 추구하는 가치, 공영형 유치원의 성과, 학부모

만족도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함

-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방안
- □ 정책방안 1. 초기 설립시 적극적 지원
- ① 추진전략 1-1. 매뉴얼에 초기 설립 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과 팁 추가
 - 초기 설립시 대출, 인가기준에 관한 인식 부재, 서류 보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뉴얼에 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임대를 하거나, 초기 설립을 위한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조 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1-2. 공공기관 임대 규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 필요
 - 공공기관 임대 규정에 필요한 행정서류의 명확한 구비를 위해 매뉴얼에 세부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② 정책방안 2. 교육청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 ① 추진전략 2-1. 교육청-지자체-설립자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청-지자체-설립자 간의 협력을 할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교육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의 연계와 지원이 필요함.
- ② 추진전략 2-2. 공공기관 임대를 위한 공간 확보 정보 제공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임대 공간 확보의 경우, 교육청이 취학권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관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매칭, 공 모 과정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함.
 - ③ 정책방안 3. 당사자 연수 및 컨설팅 체계 마련
- ① 추진전략 3-1. 유치원 설립·인가과정에 관한 컨설팅 필요
 - 유치원 인가 및 설립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육청, 사협 지원 조직과 연계된 컨설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② 추진전략 3-2. 협동조합형 유치원 컨설팅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함. 유치원 설립 전, 설립 초기, 설립 이후의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인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③ 추진전략 3-3.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들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관한 이해를 돕고, 컨설팅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④ 정책방안 4.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린 유치원 운영 모 델 확산하기
- ① 추진전략 4-1. 생태, 평등, 협력과 연대의 주요 가치를 살린 유치원 운영 모델 운영 및 연구
 -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사협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 가치와 모델이 아직 낯설고, 초기 단계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 방식을 충분히 홍보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② 추진전략 4-2. 정책 홍보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홍보하여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권을 높이도록 함.
- 3)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안
- □ 정책방안 1.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에 대한 표준성. 공정성 강화
- ① 추진전략 1-1.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성 강화
 - 매입 건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복합건물 기준에 대한 기준, 폐원 유치원 포함 여부, 매입계약서 작성에 따른 표준 계약서 예시 제시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지침이 필요함.
- ② 추진전략 1-2.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

- 매입형 유치원 관련 의사결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라 는 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③ 추진전략 1-3.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강조
 -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학부모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의사결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협력으로 가능케 하도록 함.
- ④ 추진전략 1-4. 감사관 제도의 활용
 - 매입형 선정위에 감사관을 포함하거나, 해당 유치원이 감사에 걸렸는지 여부를 자격요건에서 확인하고, 공고문에 제시하는 방법 통해 선정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 2 정책방안 2. 유아. 교직원. 교재교구 승계 조치 협의
- ① 추진전략 2-1. 교재교구 승계관련 매뉴얼 삭제 필요
 - 교재교구 승계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2-2. 사립교직원들의 비승계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 승계는 어렵지만, 일자리 제공하거나 임용고시를 보는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권장하도록 함.
- ③ 정책방안 3. 매입형 유치원 리모델링은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 ① 추진전략 3-1. 교실확대 리모델링은 급당 인원 조정 등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교실 확대 리모델링은 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제안 될 수 있음.
- ④ 정책방안 4. 법제도 마련
- ① 추진전략 4-1.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
 - 6학급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유아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4-2. 공공기관 임대 관련하여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 필요

- 공공기관 임대 관련하여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형 유치원 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5 정책방안 5. 매입형 유치원 관련 정책 홍보 확대
- ① 추진전략 5-1.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정책 홍보를 통해 정부정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오해를 줄여나가야 함. 특히 학부모 만족도, 실제 매입한 지역의 취원율 증가결과 등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6 정책방안 6.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질 개선
- ① 추진전략 6-1.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운영 유지를 통한 사립의 장점을 반영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등 운영사 항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7 정책방안 7. 관련 연구 및 성과 공유 관련
- ① 추진전략 7-1. 매입형 유치원 성과 연구 필요
 - 지금까지의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만족도 혹은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매입형 유치원을 실제 운영 시 그 성과 및 학 부모 만족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매입형 유치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사례의 공유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 ⑧ 정책방안 8. 중도포기자 관련 제재 조항 강화
- ① 추진전략 9-1. 매입형 유치원 확약 이후,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
 - 기존 매뉴얼의 내용 중 확약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중도포기 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중도 포기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이하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교육부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18년 10월)' 중 하나로, 이 방안에서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 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운영위원회 강화,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2018).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육부와 세종특별시교육청 수탁과제로,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시행을 위한 매뉴얼과 컨설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뉴얼 3종 세트(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매뉴얼)를 완성하여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에게 보급한 바 있다(박창현 외, 2020).

이상의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연구진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월)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 입방안 연구(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 2019)'에서 제시된 정책 모델, 시·도교육청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운영 계획(서울·경남·부산시 교육청 등), 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운영 매뉴얼(2018)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국공립 다양화 유치원 운영 모델을 설계하였다.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심층면담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통해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매뉴얼,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정책의 환류)을통해 해당 매뉴얼들을수 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매뉴얼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보다 나은 매뉴얼을 구성하고, 정책의 지속과 환류를 위해 기존의 매뉴얼 3종 세트를 수정·보완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초기 매뉴얼 3종 세트를 개발할 때, 시·도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나,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이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새로운 정책들이 안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후속작업이 필요하며, 후속 작업의 결과를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포함시켜 나 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선정과 매입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공모와 선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와 잡음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정에서 매입할 유치원의 교지와 교사의 범위 등에 대해 시도별 의견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 매뉴얼에 이를 포괄하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공모부터 최종 선정(일부 운영)까지의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시도의 사례 예시를 매뉴얼에 포함하고, 기존의 매뉴얼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례를 통해 내용을 풍요롭게 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다. 이미 초기 매뉴얼 개발 시, 연구진 회의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하면, 업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이미 제시된 바 있어, 일부 사례를 Q & A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행 사례들을 담기에는 연구의 시기와 진행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첫 해에는 매뉴얼 3종의 구성틀(framework)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중 하나인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지침서(매뉴얼)를 일부 보완하고, 관련 정책의 추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시도별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시도 및 현장 사례 분석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시도 및 현장 사례를 선정 공모부터 최종 선정(일부 운영)까지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추후 타 시도의 업무 담당자들이 선행 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여 정책 시행의 시행착오를 줄이 고, 업무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나. 국공립 다양화 정책 매뉴얼 수정·보완 내용 추출

국공립 다양화 정책 운영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정책 추진을 연구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들을 2021년도 매뉴얼 업데이트 버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매뉴얼에 담길 내용들을 면담을 통해 내용을 추출하고,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안

국공립 다양화 정책시행 시 어려움과 선결과제 등을 분석하여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보완하고 지원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조사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

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및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에 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 였다.

나.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분석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사례 각각 1개원 선정(유치원 표집은 교육부 추천을 통한 목적 표집 방식)하여 해당 유치원을 담당하는 시도 업무 담당자들을 심층면담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국 공립 다양화 유치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성공 또는 실패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선 방안과 매뉴얼에 담을 내용, 구체적인 사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때(공모, 선정, 운영 등) 경험했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 사례, 2021년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정책 건의사항, 국공립다양화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질문을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표 Ⅰ-3-1〉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질문지 내용 예시

면담 질문지 내용

- 1. 귀하가 (공영형/협동조합형/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추진할 때(공모, 선정, 운영 등) 경험하셨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 2021년도 (공영형/협동조합형/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공영형/협동조합형/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 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편,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사례가 많지 않아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협 대표 3인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담을 추가하였으며, 초기 협동조 합형 유치원 매뉴얼 공동연구진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속 활동가 3인에 대한 심층면담과 함께 매뉴얼 수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동육아와 공동체는 현재 경기 아이가행복한유치원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어, 유치원 운영 사항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심층면담 대상자들이었다. 심층면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별 또는 집단심층면담 일시, 안건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Ⅰ-3-2〉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일시, 안건 및 참석자

구분	일시	안건	참석자
1차	2020.12.3.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정첵제언	연구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소속 전문가 3인
2차	2020.12.5.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에서 운영까지의 시행 착오 및 우수 시례 공유, 매누얼 수정보완 사항 및 개선사항	연구진,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이사장 및 대표 3인, 조합원 1인
3차	2020.12.8.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시· 도교육청 전문가 심층면담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1인
4차	2020.12.8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시· 도교육청 전문가 심층면담	연구진, 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 담당자 1인
5차	2020.12.9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시·도교육청 전문가 심층면담	연구진, 경기화성오산지원청 업무 담당자 2인

다.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시행하는 17개 시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0년 12월 2일에서 17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에 시도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총 3차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공영형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은 6명,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5명, 매입형 유치원은 12명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무조건 포함하였고, 직접 시행은 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계획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문을 발송하고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전문가 자문회의 3차를 모두 진행하였다. 한편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공영형 유치원 8개원 대표와 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 교직원, 부모대표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요청하였다.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각각 1회씩, 모두 2차의 서면 자문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는 \langle 표 I -3-3 \rangle 과 같다.

〈표 Ⅰ-3-3〉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

구분	일시	안건	참석자
1차	2020.12.2.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연구진, 교육부 및 12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2차	2020.12.2.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연구진, 교육부 및 6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3차	2020.12.4.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연구진, 교육부 및 5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4차	2020.12.1417.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서면) 전국 공영형 유치원 8개원 대표
5차	2020.12.1417.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보완 및 사례 분석을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서면)서울 00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 교직원 및 부모 대표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방향 설정, 면담내용 구성, 정책 시사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진과 수시로 협력하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하였다. 수시과제 연구 수행 방안 논의(일정, 내용, 방법), 교육부 요청사항 및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심층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에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매뉴얼 수정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논의하였다.

〈표 Ⅰ-3-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시, 안건 및 참석자

구분	일시	안건	참석자
1차	2020.11.13.	수시과제 연구 수행 방안 논의(일정,내용,방법), 교육부 요청사항 및 기타 사항 논의	연구진 및 교육부 업무 담당자 3인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에 관한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해당 정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실무 담당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수정하고,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주로 개별 또는 집단심층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모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점이 있다. 코로나 19로 모두 화상회의와 서면자문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한 공영형 유치원이나, 새로 개원한 경기협동조합형 유치원 방문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요구와 사례를 직접 듣기는 불가능하여 연구자로서 아쉬움이 있었다.

둘째, 연구기간이 다소 짧아 심층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각각 1회씩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담과 회의 이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직접 전화로 질문하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최대한 정확한 심층면담과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선행연구

공영형 유치원 모델은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주요 정책이나, 실제로 유아교육선 진화 정책에서 제시된 바가 있는 유치원 모델이다. 이때, 공공형, 지원형 등의 유치 원 모델이 제시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바는 없었다. 공영형 유치원 관련 연구는 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어, 사립학교에 포함 되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기제를 강화하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 표로 연구되어 왔다.

공영형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임재홍, 강남훈, 김용석, 김진석, 박창현 (2015)의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준공영형 사립 교육기관의 모델을 제시되어 있고, 공영형 유치원 모델로 법인화형, 기부채납형 등의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최은영, 박창현, 송신영(2016)이 실시한 공공형 유치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법인화가 어려운 사립유치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공공성 지표의 충족하는 유치원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인 사립유치원들의 학교 정체성은 어린이집의 공공성과는 다르기때문에,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안만 제안되었다.

셋째,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다양화 모델로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례와 성과 등을 포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공공 유아학교의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공영형과 법인화형, 지원형등의 모델을 제안하여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의무교육이 시행될 때 가능한 지점으로 현재는 공영형 유치원 정책만 추진 중에 있다.

넷째,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이유진 외(2020)의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사립유치원 모델 실행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개선 방안과 선정 및 운영 매뉴얼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공영형 유치원 선정 평가와 재선정 평가지표의 예시를 다루고 있으며, 시도 재량 및 자율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영형 유치원의 정착을 강조하였고, 17개 시·도교육청별 지역 특성과 인구변화에 알맞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수탁과제로 실시한 박창현, 이덕난, 이솔미(2020)의 공영 형 유치원 성과분석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가 있으며, 서울 더불어키 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평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재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 관한 정책 과제도 제시되어 있다. 서울특별 시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서울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의 성과를 살펴보면, 학부모 부담 완화, 유치원의 공공성 이미지 강화, 회계투명성과 책무성 등이특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들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현황 및 법제도

01 관련 정책 및 현황

02 관련 법령

Ⅱ.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현황 및 법제도

1. 관련 정책 및 현황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1) 및 현황

공영형 유치원이란,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의미한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에 개방이사를 배치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사립유치원 혁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법인전환 예정 포함) 등 법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공영형 유치원의 특성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과 재정지원을 받지만, 교육과정 등 유치원 운영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립유치원의 건학이념 틀에서 이루어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 보장된다.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의 공공성과 사립의 자율성이 결합된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이다.
- 공공성 확보, 공립에 준하는 운영, 사립의 특수성 보장, 상호 보완 협력 체제 구축 운영, 공정한 업무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 공영형 유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모집하고,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
 급 운영을 강조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

¹⁾ 공영형 유치원의 개념과 특성, 도입 배경과 필요성, 핵심가치, 추진경과와 성과의 경우,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 운영 안내서: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결합한 공영형 유치원 만들기(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2020)의 pp.6-11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음.

2) 공영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가) 유아교육 격차 해소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교육비의 보편적 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비하여 학부모 부담금이 높아 학부모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 교육 선택권 확대
 -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이나, 원도심 등 도시 지역은 부지 확보,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 첨예 등 사유로 공립유치원 신설에 어려 움이 있어 유아의 교육 선택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

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은 고유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국공립유 치원의 유아수용률을 보완하여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 이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더불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 가치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장점을 살려 학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치원 운영 혁신 모델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결합하여 유아·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의 본질을 현장에서 실현하며, 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보편성, 투명성, 참여성), 자율성(교육혁신, 운영의 자율성), 교육의 질적 혁신(유아·놀이 중심의 교육 구현)이다.

4) 공영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와 방향

가) 추진 경과

- '제1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3)'에서 '공영형 유치원' 도입 검토
- 공영형 유치원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16.4-12)
-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17.3.8)
 - 사회적 배려계층이 밀집한 지역, 원아 수용률이 낮은 지역 등의 사립유 치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형 유치원' 도입
-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안내('17.5.4, 5.8)
- 공영형 유치원 시·도 업무담당자 설명회 개최('17.6.27)
- '공영형 유치원' 추진 관련 이해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시·도교육청, 전문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17.9.13, 9.22, 9.26)
-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시·도교육청 안내('18.3.27)
- 시·도교육청(수요 제출: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전남) 대상 실무협의회 개최
 ('18.4.10)
- 공영형 유치원 2개 원(광주 인양, 강원 프랜비숲 유치원) 선정, 운영(18.9)
- 공영형 유치원 1개 원(대구 나래 유치원) 선정, 운영('20.3)

나) 추진 성과

- 공·사립 장점을 결합한 건전한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로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해 왔다.
 - '18.9월 2개 원, '19.9월 1개원 선정 후 컨설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 영형 유치원(광주 인양, 강원 프랜비숲 유치원, 대구 나래 유치원)을 정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5) 공영형 유치원의 현황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전국에 총 8개 운영 중에 있다. 서울 4개원, 대구 2개원, 광주, 강원이 각각 1개원 운영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시도자율추진과 국가시 책사업의 두 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자율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

은 시도자율추진으로 총 4개의 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명칭은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으로 통용되고 있다. 2017년, 2018년에 시작하여 총 5년 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원별로 7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다. 대구의 경우, 시도 자율추진인 개방형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1개원이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1개원이 있다. 광주와 강원의 공영형 유치원은 모두 국가시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3억에서 5억원 사이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1-1〉 공영형 유치원 현황

시도	구분	유치원명	소재지	운영기간	학급	현원	교직원
		대유유치원	강서구	2017.3.〜2022.2. (5년)	4	77	11
110	リヒエロギエ	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3	65	8
서울	시도자율추진	명신유치원	영등포구	2018.3. ~2023.2.	5	104	14
	영천유치원	성북구	(5년)	3	57	13	
	시도자율추진	위즈숲유치원	동구	2018.3. 〜2021.2. (3년)	7	138	19
대구	국가시책사업 (4억)	나래유치원	달서구	2020.3. 〜2023.2. (3년)	4	51	6
광주	국가시책사업 (3억)	인양유치원	북구	2019.3. 〜2022.2. (3년)	3	56	7
강원	국가시책사업 (5억)	프렌비숲유치원	강릉	2019.3. 〜2022.2. (3년)	5	125	13

자료: 교육부(2020).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2) 및 현황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란, 학부모조합원(소비자조합원), 교직원조합원(직원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중 부모와 교직원조합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²⁾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개념과 특성, 도입 배경과 필요성, 추진경과와 성과의 경우,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운영 안내서: 교육공동체가 합께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육아 정책연구소, 2020)의 pp. 6-19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음.

1)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어 유치 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함. 운영의 주요 원리는 참여와 협력,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의 연대이다.
- 부모들과 교직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의 부모, 교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상호 출자하여야 한다.
 - 부모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있는 가구당 1인으로 한 정한다.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중 주요 사항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조합의 의사 결정에 따른다.
 - 정관 작성 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합원 가입을 전제 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원장을 채용할 수 있다.
 - 조합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치원은 원장이 교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다.
 - 유치원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맡되, 주요 사항은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92조 총회, 이사회의결에 관한 사항 규정 준수).
 - 조합원은 유치원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하여 설립 목적을 함께 달성하도록 한다.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재원은 출자금과 가입비로 구성한다.
 - 출자금의 경우, 주로 유치원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는데 사용한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한다. 또한 조합 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2)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계에 주는 함의

- '사유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에서 '공유한다', '함께한다', '함께 키운다'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할 수 있다.
- 공급자-수요자라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당사자 가 함께 참여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탈근대적 교육 프레임으로의 패러다임 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 유아교육의 '공공성'의미를 재구조화하여, 정부 역할(公.public)과 시민 및 공 동체 역할(共.common)을 일체화할 수 있다.

나)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추진 방향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 유치원이 '학교'이 며 '공교육기관' 임을 재천명하였다.
 -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협동조합형 유치원, 유치 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등).
-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 제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정부의 역할과 시민 공동체의 역할을 일체화하고, 시민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로운 유치원 혁신 모델이다.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보육과 협력적 교 사회, 유치원의 교육내용 등을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 ① 유치원 운영의 개방성과 자율성, 절차의 민주성, 재정의 투명성을 화보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의무
 - 유치원의 경영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 유치원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실 현하다.
 -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경영 여건 개선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 운영·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 현황, 재정 운용 등은 사회적 협동조합 총회의 보고, 의결 사안이다.
 - 유치원의 구성원들은 조합원으로서 참여하여 유치원 운영에 대해 알 수 있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회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
- 운영의 자율성과 절차의 민주성
 -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에 서 논의, 의결한다.
 - 구성원들은 조합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중요 사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사안들을 협 의, 결정할 수 있다.

② 설립 주체의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성격과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므로 유치원이 '개인화', '사유화', '영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를 비롯하여 정관과 규약·규정들이 있으므로, 유치원 운영의 중요 사안들을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

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와 방향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 제시('18. 10)
- 서울 노원구 꿈동산 아이 유치원 설립('19.3.4)(개원식: '19. 3.12)
 -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유치원을 개원한 대표적 인 사례로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 들의 출자금으로 충당하였다.
- 경기 동탄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인가 ('19. 5.30)
 - 2018년 한유총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준비모임을 구성
 - 2018. 11.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 2019. 1.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1차 설명회
 - 2019. 05. 30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교육부)
 - 2019. 11. 조합원 모집
 - 2019. 12.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 2020. 01. 교사 채용 및 리모델링 완성
 - 2020. 3. 경기도 화성시 동탄 목동 이음터 1층에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 2020. 03. '아이가행복한유치원' 긴급돌봄 시작
 - 유치원 개원 전까지 오산시에서 품앗이 육아를 진행
- 경북 구미 '이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유치원 개원 예정('21.3)

4)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현황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현재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꿈동산아이유치원은 2019년 3월 개원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파트 건물에서 공공기관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초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총 9학급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경기 아이가행복한 유치원은 화성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화성시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목동이음터 건물에 공공기관 임대방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주도하여 2019년 5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급은 총 4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1-2〉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	-------	-----	----

시도	유치원명	소재지	개원	재산소유자	조합설립	학급
서울	꿈동산아이 유치원	노원구	2019.3.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임대유치원)	2018.1.	9
경기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화성동탄 2신도시	2020.3.	화성시청 목동이음터 (임대유치원)	2019.5.	4

자료: 교육부(2020).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³⁾ 및 현황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매입은 교사(校舍), 교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매입형 유치원은 학습권 보장을위한 유아조치계획을 세우고, 재원생 중, 재원을 희망하는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 승계가 가능하다.

1) 매입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가) 유아교육 공공성 및 국가 책무성 강화

- 유아교육의 공교육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학부 모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나) 공립유치원 확대 지원

- 교실 부족으로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설치가 어렵거나,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도심 지역은 초등학교도 과밀 학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도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용지 부족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에 한계가 있다.
- 현재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다.

³⁾ 매입형 유치원의 개념과 특성, 도입 배경과 필요성, 추진경과와 성과의 경우, 2020 매입형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만들기(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2020)의 pp. 6-8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음.

다)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의 행정 비용 절감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설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시 주변 사립유치원 반발 등의 정책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시, 신규 유치원에 따른 유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인 근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높다.

2) 매입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

매입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8. 4. 10 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계획 발표
- '18. 10. 25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 '19. 1학기, 1개 원 운영 중임(서울 구암 유치원).
- '19. 2학기, 4개 원 운영 중임(서울 좋은소리, 수명, 신정, 금낭화 유치원).
- '20년 30개 원이 운영 중임(서울 9개, 경기 14개, 부산 3개, 울산 1개, 광주 1개, 경남 2개).
- '21년 12개 원 개원 예정임.

3) 매입형 유치원의 현황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현재 35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개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이 3개 원, 경남이 2개 원, 울산과 광주가 각각 1개 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서울과 경기가 매입형 유치원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1-3〉 매입형 유치원 현황

시도	유치원명	소재지	학급	개원일
	구암유치원	관악구	7	2019.3.
서울	좋은소리유치원	성북구	7	2019.9.
	수명유치원	강서구	11	2019.9.
	신정유치원	양천구	12	2019.9.

시도	유치원명	소재지	학급	개원일
	금낭화유치원	강서구	5	2019.9.
	방학유치원	도봉구	6	2020.3.
	연지유치원	노원구	6	2020.3.
	창동: 마들 유치원	도봉구	6	2020.3.
	역촌유치원	은평구	8	2020.3.
	북한산 (구)하늘	은평구	9	2020.3.
	산울림 (구)하나	은평구	10	2020.3.
	수락산 (구)새봄	노원구	7	2020.3.
	어진 (구)예원	서초구	11	2020.3.
	청림 (구)은비	관악구	9	2020.3.
	엄궁유치원	사상구	6	2020.3.
부산	금곡나래유치원	북구	6	2020.3.
	화명꿈유치원	북구	6	2020.3.
 울산	상안유치원	북구	8	2020.3
 광주	새미르유치원(구)한스유치원	북구	8	2020.3.
	밤밭누리유치원(구)홍하유	수원	12	2020.3.
	숲속해뜰유치원(구)숲속해아뜰유	군포	7	2020.3.
	포일사과나무유치원(구)애플트리유	의왕	10	2020.3.
	반디유치원(구)반디유	화성	10	2020.3.
	광주유치원(구)광주한솔숲유	광주	16	2020.3.
	용인아람유치원(구)루아숲유	용인	9	2020.3.
7171	별빛누리유치원(구)이든유	안성	8	2020.3.
경기	솔마루유치원(구)에꼴데쁘띠유	고양	9	2020.3.
	오산숲유치원(구)그린숲유	오산	10	2020.3.
	초롱유치원(구)청명유	용인	12	2020.3.
	수지누리유치원(구)수지다솜유	용인	8	2020.3.
	군문유치원(구)정민유	평택	8	2020.3.
	현화유치원(구)현화프라임유	평택	11	2020.3.
	창현유치원(구)창현생태유	남양주	13	2020.3.
7비나	명지숲유치원	창원	14	2020.9.
경남	우듬지유치원	김해	12	2020.9.

자료: 교육부(2020).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2. 관련 법령

가. 공통 적용 법령

다음의 법령은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1) 유치원의 설립 및 폐쇄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은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렵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1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었다고 해도 교육감이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을 인가하지 않는다(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2호).

〈표 Ⅱ-2-1〉 유치원의 설립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2)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원 2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을 제외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모든 유치원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며(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3항),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심의기관이고 사립유치원에서

는 자문기관이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2항).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유치원 인성교육계획에 대해 심의·자문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국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이 외에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표 Ⅱ-2-2〉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조문	내용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 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운영위원회 심의 · 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사기 아니한 사람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 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

조문	내용
	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3)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유 아교육법 제10조제1항), 유치원규칙에는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학급편제 및 정원, 교육 내용,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금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관할청)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표 Ⅱ-2-3〉 유치원규칙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조문	내용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2.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 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4) 교직원

유치원 교원은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며(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수 있다(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표 Ⅱ-2-4〉 교직원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이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이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5) 무상교육 및 유치원 원비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5

조는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표 Ⅱ-2-5〉 무상교육 및 유치원 원비

조문	내용
2世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6) 지도·감독 및 평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이에 따라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

합형 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8조제2항). 또한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9조제1항).

〈표 II-2-6〉 지도·감독 및 평가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18조 (지도·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
	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
	학지도를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
	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
	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7) 교육과정 및 생활기록부

유아교육법 제13조는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4조는 유치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 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표 Ⅱ-2-7〉 교육과정 및 생활기록부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나. 매입형 유치원 적용 법령

1) 유치원회계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며(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유치원 회계의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 입금,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으로 구성된다(유아 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표 Ⅱ-2-8〉 유치원회계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조문	내용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다. 공영형 유치원 적용 법령

1) 사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쇄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유아교육법 제8조제2 항·제4항)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시에는 유치원규칙,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신원진술서),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초·중등학교 및 대학은 학교법인만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나(사립학교법 제 3조),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뿐 아니라 공공단체 외의 법인과 사인도 설립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표 Ⅱ-2-9〉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 4.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0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등 그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 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문	내용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15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이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조문	내용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2) 사립유치원 이사회

학교법인에는 이사회를 둔다(사립학교법 제15조제1항).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

〈표 Ⅱ-2-10〉 사립유치원 이사회

<u> </u>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15조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3) 사립유치원 임원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나,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 의 감사를 둘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1 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 서 선임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4조제2항). 이사회 구성 시 서로 민법 제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사립학교 법 제21조제2항).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에서 교원으 로 근무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 학교법 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실비의 변상을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

〈표 Ⅱ-2-11〉 사립유치원 임원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한다)에 두고 그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하는 대학및 대학원 설치ㆍ경영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추천을 완료하여야하며, 그 기간에추천하지 못하면관할정이추천한다.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 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

조문	내용
	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나에 해당하는 교육 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원이 소에 따라 파인된 글루터 5년이 시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 · 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 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	내용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의 「인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의 설리자와 「인법」 제2한다)이었던 사람 6.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4) 사립유치원 회계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유치원회계로 구분한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제51조). 유치원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표 Ⅱ-2-12〉 사립유치원 회계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

조문	내용
	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대통령의 장의 전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사립학교법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3조 (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 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사립유치원 재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이러한 규정은 학교법인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다른 법인 및 사인에게도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

〈표 Ⅱ-2-13〉 사립유치원 재산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합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합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 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 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WO
조문	내용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관합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6) 사립유치원 교지 및 교사의 소유주체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립유치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2항).

〈표 Ⅱ-2-14〉 사립유치원 재산 및 회계

조문	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 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수 있다. 1.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간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7)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법 인과의 합병, 파산,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해당할 시 해산한다(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 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 정 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

〈표 Ⅱ-2-15〉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기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합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자가 관합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하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에서확인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 · 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제상하에 따른 처분을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 · 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8)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유아교육법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제1항).

〈표 Ⅱ-2-16〉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후의 지원을 중단할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적용 법령

1)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표 Ⅱ-2-17〉 협동조합의 정의

TD	LIIO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다만, 출자금,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기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

조문	내용
	·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①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 로 한다.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

〈표 Ⅱ-2-18〉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조문	내용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인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조문	내용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 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 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3) 협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총회

협동조합에 총회를 두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 원으로 구성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2항).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은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 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

〈표 Ⅱ-2-19〉 협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총회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4) 협동조합의 이사회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두고(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1항),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2항).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표 Ⅱ-2-20〉 협동조합의 이사회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5) 협동조합의 임원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2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3항).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3항).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 조

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협동 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표 Ⅱ-2-21〉 협동조합의 임원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2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6)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제1항).

〈표 Ⅱ-2-22〉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 (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 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 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7) 협동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표 Ⅱ-2-23〉 협동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조문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8) 사립유치원 회계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유치원회계로 구분한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제51조). 유치원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표 Ⅱ-2-24〉 사립유치원 회계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른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조문	내용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 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3조 (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장관이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 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으 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저 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 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 여 준용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사립유치원 재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이러한 규정

은 학교법인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다른 법인 및 사인에게도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표 Ⅱ-2-25〉 사립유치원 재산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합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합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 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 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 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 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 여 준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20.12.22.)

10)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 소유주체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립유치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2항). 그러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가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이소유하는 시설·건출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표 Ⅱ-2-26〉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 소유주체

조문	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기)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 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수 있다. 1.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건축물 그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나.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			
	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11)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유아교육법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제1항).

〈표 Ⅱ-2-27〉 사립유치원 비용 지원

조문	내용				
유아교육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조문	내용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업무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후의 지원을 중단할수있다.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 01 공영형 유치원
- 02 협동조합형 유치원
- 03 매입형 유치원

Ⅲ.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의 경우, 크게 공영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순으로 정리하였다. 각 내용들은 면담 내용의 순서대로 1)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2)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3) 정책 추진 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안할 점, 4) 국공립다양화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과 비추진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공영형 유치원

- 가.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 1) 공영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강원, 광주)

가) 서울

서울의 경우, 2017년 2개, 2018년 2개 이후, 더 이상 공영형 유치원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들이 법인 전환에 대해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개방이상의 문제보다 법인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뿐 아니라 교육용 기본재산도 마련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영형 유치원 선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사인이 법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영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되는 5년 후에 원아 이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 법인은 주로 종교 법인(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보다 더 많음) 이 많은데, 종교법인에는 개방 이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이며, 사회복지법인 개방이사가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법인화 및 개방이사 선임 등 참여조건을 수용하고 공영형 유치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유치원 현장 실사 중 유치원 시설이 현행기준에 부적합하여 제외 대상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다. 유치원 시설기준이 부적합 경우, 법인화 및 유치원 설립인가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함으로 비용을 들여 시설 변경 후에 다른 변수로 공영형 유치원으로 미선정될 우려로 인하여 교육청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나) 대구

대구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시행할 때, 특히 사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다. 사립유치원에서 신청 당시, 법인 전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유치원에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개방 이사 및 이사회 구성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개방 이사는 추천하면 되지만 이사 요건 까다롭고, 이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이사회 구성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는 설립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설립자가 재산을 기여하는 구조이므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표 Ⅲ-1-1〉 심층면담 사례: 대구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사롄

심층면담 사례: 대구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사례

면담 참여자는 교육부의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이 있으니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기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 경감, 회계투명성 개선, 공사립 장점 결합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공영형 유치원 반대 여론 줄이기

매입형 유치원 보다 공영형 유치원은 반대가 적은 편으로. 공영형 유치원은 통학버스 등 공립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구별로 1-2개씩 추진하니 반대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법인 전환에 대한 매뉴얼 상세화 필요

가장 힘든 부서가 법인 전환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매뉴얼에는 학교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려는데 부지 내 불법 건물이 있었다. 또는 교육청에 연락 안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유치원에서 나가게 된다. 이에 대구는 시설투자비를 운영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회계 지침을 마련하였다.

□ 법인화 이후 공영형의 지속가능성 보장 필요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마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처음부터 사인이 아니라 법인이 공영형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현장에서는 공영형 어린이집은 법 인 전환 안 하는데 유치원은 왜 법인으로 전환하냐는 문의가 들어온다. 법인 전환에 약 1년이 걸린다. 교육부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인 전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사업이 3년이면서 왜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냐는 의견들이 들어온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10년 사업이다. 또한 단지 공영형 유치원 정책이 학부모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목표라면 법인 전환은 더 이상 불필요할 수 있다.

□ 개방 이사 추천은 교육청과 유치원 상호인력풀을 활용

대구에서는 자체사업인 개방형 유치원과 정부시책사업인 공영형 유치원을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선임절차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청과 유치원이 상호 인력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시도 교육청에서 선임하는 것보다 우리는 같이 협의해서 했거든요.

□ 친절한 매뉴얼 만들기: 매뉴얼 양식에 예시 구문 포함하기

매뉴얼 유치원 운영계획서에는 사립유치원들이 매뉴얼을 보고 작성할 수 있는 예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립유치원 유아특수학급 설치 현실화 정책 필요

대구에서도 특수학급은 사립에 설치하지 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교직원의 노동조건 강화

공영형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휴게시간을 중간에 줄 수 없어서 시간외수당 지급해야한 다고 하였다.

□ 건실한 종교법인에는 개방이사제도를 유연하게 적용

종교법인은 개방 이사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상 개방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종교법인에는 적용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구의취약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톨릭 계열의 유치원이 있으나 개방 이사 때문에 공영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는 열악한 지역에 많이 세워져있거든요. 거기 병설 유치원, 단설유치원도 없는데 거기 천주교 재단이 4개나 있는데. 천주교 재단은 그래도 사회법인보다는 신뢰롭고 지역도 열악한 곳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 장학사(관) 중심으로 협력하는 조직문화

공영형 유치원 업무를 행정직이 아닌 유아교육과의 장학사가 주도해야 지원청과 행정 직을 아우를 수 있고, 공영형 유치원 추진의 부서간 칸막이 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힘든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서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다) 강원

강원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2018년까지는 강릉에서 원비가 가장 높은 유치원이었으나, 2019년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하면서 강릉에서 가장 낮은 유치원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도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2020년 2월 사업 종료 이후 사립유치원으로 전환 시 높은 원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학부모들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유치원과 학부모들 간 갈등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라) 광주

광주의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개념 및 관련 정보가 유치원에도 공유가 되어야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유치원과 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기대와 이해의 격차가 커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다.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과 유치원의 이해 및 기대 격차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격차에 따른 불만으로 공영형 유치원 운영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2년차 4분기), 상호 이해 및 수용으로 그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현재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교사들은 공립에 준하는 급여 인상을 기대하나 공립의 8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기대차가 존재하였다.

2) 공영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경북, 대전)

가) 경북

경북은 현재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교 3년 한시 지원 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가 부담되어 사립유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 대전

대전의 경우, 2018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추진하였고, 1개원을 추천을 했는데 선정되지 않아 현재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전의 경우, 법인 전환 후 폐원하거나 매각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 유치원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2〉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서울의 경우, 개방이사의 문제보다 법인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공영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되는 5년 후에 원아 이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 종교법인이 많은데, 종교법인에는 개방이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 - 유치원 현장 실사 중 유치원 시설이 현행 기준에 부적합하여 공영형 선정에서 제외 대상된 사례가 있었음.					
	대구	- 사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개방이사 및 이사회 구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개방이사는 추천하면 되지만 이사 요건 까다롭고, 이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이사회 구성 어려웠음.					
	강원	- 강원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강릉에서 원비가 가장 낮은 유치원이 되었음. 그러나 2020년 2월 사업 종료 이후 원비 인상으로 인해 유치원과 학부모들 간 갈등 예상					
	광주	 -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개념 및 관련 정보가 유치원에도 공유가 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기대와 이해의 격차가 커서 갈등이 발생함. 					
비추진	경북	- 경북은 현재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교 3년 한시지 원 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가 부담되어 사 립유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대전	- 2018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추진하였고, 1개원을 추천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음. - 법인 전환 후 폐원하거나 매각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 유치원들이 많음.					

나.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 공영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강원, 광주)

가) 서울

현재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은 교육청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선정·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영형 유치원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에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업무 담당자의 매뉴얼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공영형 유치원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매뉴얼 새 버전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전환이어떠한 의미(재산, 유치원 소유, 설립자의 위치 등)를 주는지,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이 안될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원비 책정, 학부모 안내, 유치원 폐원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대구

첫째, '유치원형' 공영형 유치원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도교육청업무 담당자용도 필요하나,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할 때 유치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침이 너무 자세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매뉴얼의 내용들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꼭 필요한 지침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사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데, 매뉴얼에는 3개월 안에 법인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전환에 10개월이 걸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강원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 내용이 보다 명확히 들어가기를 바란 다고 하였다.

라) 광주

특히 재선정 부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 공영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경북)

가) 경북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의 문의 사항 등을 요약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3〉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업무 담당자의 매뉴얼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공영형 유치원들도 알 수 내용의 매뉴얼이 필요 법인 전환의 의미, 공영형 유치원 재지정이 안될 경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 					
	대구	 유치원용 공영형 유치원 운영 매뉴얼이 필요 매뉴얼의 내용들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꼭 필요한 지침들로 구성할 필요 3개월 안에 법인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전환에 10개월이 걸리므로 0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이 필요 					
	강원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광주	- 재선정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 필요					
비추진	경북	-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의 문의 사항 등을 요약하여 정리할 필요					

다. 정책 추진 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안할 점

1) 공영형 유치원 추진 시도(서울, 대구, 강원, 광주)

가) 서울

공영형 유치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출연 문제에 대하여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예외 규정 신설하거나, 최소한의 비율 로 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 대구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시, 당해년도 약정 시 지원하였던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3년 동안 지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다) 강원

특교로 3년만 예산을 지원할 경우, 그 이후 예산 지원에 대한 방안, 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라) 광주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 및 사업의 지속성 부분까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교육청은 재약 정을 희망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입장인데, 어는 방향이든 업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업 추진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하는 가이드라 인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3년 이후 재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공영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경북, 대전)

가) 경북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이 분리되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경북 지역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자리잡기도 전에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먼저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대전

공영형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치원들은 많으나,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 약정 종료 시점인 3년 후에 대한 문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보다 명확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 L.) 300 11412 04 124 224 3411, 04 122 222 1, 4122 1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수익용 기본재산의 출연 문제에 대하여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예외 규정 신설하거나, 최소한의 비율로 하여 규제완화 필요					
	대구	- 당해년도 약정 시 지원하였던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3년동안 지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강원	- 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포함될 필요					
	광주	- 사업의 지속성 부분까지 명확하지 않음. 3년 이후 재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나올 필요가 있음.					
비추진	경북	-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이 분리되어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야 함.					
	대전	- 참여를 유치원들은 많으나, 정책 이해도가 낮으므로 적극 홍보를 해야 함. - 약정 종료 시점인 3년 후에 대한 정책이 보다 명확하기를 기대					

〈표 Ⅲ-1-4〉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제안할 점

라. 공영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 공영형 유치원 추진 시도(서울, 대구, 강원, 광주)

가) 서울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정체성에 대하여 학부모, 사립유치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참여조건을 개선하여 현재 법인+개방 이사(과반수 선임) 규정을 법인+개방 이사(3분의 1 이상 선임)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3개년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입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해야 하므로, 유치원만을 설립·경영하려는 학교법인에 한하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나) 대구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여, 시도 담당자들이 신뢰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강원

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년 이후 재선정 시 특교 지원이 된다면 재선정도 가능한 구조이며, 유치원에서 3년 후 원비 인상을 우려하므로 미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특교가 내년에 학급당 2천 만원 감소(5학급당 1억원 감소)이 감소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점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광주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의 도입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공영형 유치원 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2) 공영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경북)

가) 경북

특교 지원의 다양화 및 특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여야 교육청의 의지가 상향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당 정책의 취지와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오해로 인한 교육청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5 〉	공영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ㅣ	내된
--	----	----------------	-----	-----	-----	----	-------	----	----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정체성에 대하여 학부모, 사립유치원 등에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대구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해야 함. 				
	강원	- 3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예산 지원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광주	- 향후 공영형 유치원 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				
비추진	경북	- 특교 지원의 다양화 및 특교 기간의 연장이 필요 -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유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협동조합형 유치원

가. 정책 추진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1)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경북)

가) 서울

서울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작년에 개원하였는데 교육지원청 의견으로는 현재 유 아모집이 다 찼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였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유, 운영 상의 문제보다 설립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서울의 경우, 협 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지원청에 거의 권한을 위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원청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 경기

(1)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근거가 마련으로 경기 화성오산지원청과 화성시청에서 학교복합화 시설 임대를 추진하여 동탄지역에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개원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제한적인데, 이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가 행복한유치원은 유아모집이 거의 다 찼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해당 지역에 비리유치원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유치원 교육철학의 공통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비리 유치원들을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형 유

치원이 공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설립을 원한다고, 무조건 오픈할 수는 없고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해야 하며, 유치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교육청에 이들을 지원하라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하였다.

공동육아와 공동체의 경우, 자신들만의 교육철학이 있으나 유치원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협동조합으로 초중고 만드는 케이스는 없으므로, 협동조합이 아니라 유치원 설립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해야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도 공공기관 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안정성이 약한 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자가로 설립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임대를 교육부 및 교육청 지원을 받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앞으로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 내실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원하는 사협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주었다.

첫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해본 결과, 신설한 유치원에서는 부관 설정을 통한 원장 자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초기 발기인에 학부모 대표를 반드시 넣거나, 학부모와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면, 유치원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례를 넣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Ⅲ-2-1〉심층면담자료: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사례

심층면담자료: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사례

□ 공동육아와 공동체 연구진

현재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이사회 구성이 좋으나, 교사회의 팀워크는 아직 시행착 오 중이며, 조합원 교육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렵다고 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에서 풀뿌리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게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매뉴얼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수정해 야한다.
-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이 2020년 3월에 개정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자 운영에 관한 수정 과 보완이 필요하다.
- 유치원 원장들의 협조 통해서 사례 추가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202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0 협동조합 상담사레집,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자료, 202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을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 협동조합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협동조합형 유치원 뿐만 아니라 공영형 유치원에서도 법인 이사회 역할과 유치원운영위원 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다.
- 자격을 갖춘 원장이 조합 출발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음.
- 부록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 정관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요함.
- 협동조합은 부모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유치원 운영은 장학사와의 관계가 중요.
- 매뉴얼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재원을 출자금과 조합비로 구성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에 대한 내용은 설립 파트에 들어가야 한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반모임 대표를 삭제하고 협동조합 임원은 학부모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 컨설팅 예시에서 공동육아에서 한 컨설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동안 컨설팅 한 내용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도 화성오산지원청 업무 담당자

○ 교육청-지자체-설립자 간의 협력 필요

면담 참여자인 지원청의 업무 담당자들은 매뉴얼을 보니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있어서 매우 잘 만들었다고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이고, 관련 업무는 시청, 교육지원청이 관여하므로, 이들과 설립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지원청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많이 하였으며, 협동조합형은 지자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탄에서도 그 공간이 원래 어린이 도서관 용도였는데, 일부 공간에 유치원이 들어오게 된 것은 교육청과 화성시청의 협력 때문이었다.

• 유치원 설립인가 시 어려움: 대출, 인가기준에 관한 인식 부재, 서류 보완 부족 막판에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인가낼 때 힘들었다고 한다. 놀이터 자체 제작으로 인가가 지연되었고, 설립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 이 있었다고 하였다.

우선 초기 비용이 5억5천만원인데 대출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으며, 놀이터 자체제작은 규정에 안맞았다. 체육장 교구를 인증된 곳에서 하면 문제없으나 자체 제작을 하다보니 인증이 지체되었으며, 목재를 사용하다보니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설립인가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보완이 안되어서 어려웠다.

○ 공공기관 임대 규정으로 인한 행정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학부모들이 공공기관 임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대를 하려면 시청 및 교육청에서 공공기관 임대 알선이 필요하다. 매뉴얼에 공공기관 임대가 가능한 곳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임대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서는 없애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교비회계에서 계속 나가야 하므로 학부모 부담이늘어나는 요소가 된다.

임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서류 있으나 받기 어려웠다. 건축물 현황도 이음터라서 내부 배 치도도 없었다. 이에 현황도 대신 설계도면으로 대체했고,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도 임대관 련 공문으로 대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청에서 임대 가능 시설을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도 입지가 좋은데 싸게 들어갔으니 다른 사립유치원들은 특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내부 비품은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있어 이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지침 급당 인원은 3세 16명, 4세 22명인데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이사회에서 급당 인원을 줄여 양질 교육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철 학이 있어 훌륭하다고 하였다.

인가낼 때 힘들었던 부분이 설립인가 시 재산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달리 출자금과 조합비가 분리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재산으로 인정할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주 사업은 유치원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도 가능은 하다. 학교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지만 학교법인도 다른 재산목록을 모두 받는다. 최소 5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설립가능하다. 지침상 3개년 운영가능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이 많

이 모집되어야 재산 마련이 가능한 구조이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출자금과 조합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 이 필요하다. 조합비 일부를 학교회계로 전입하고 법인 운영을 위해 나머지를 법인회계로 전입하는 기준이 없다. 조합 시설사용료로 일부 해결하고 나머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교비회계로 편성하면 자기부담을 아이들에게 전가가 가능해진다.

현재 동탄은 유치원비 10만원, 조합비 15만원, 총 25만원의 학부모 부담금 받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이 월 2-3만원 이내의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학부모 부담 경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거리가 있다. 인원 수가 적으면 조합비 많이 낸다.

○ 취학권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가 가능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 권역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다. 유치원 설립이 필요없는 취학권역에 유치원 설립은 할 수 없는 것이다.

○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 필요

유치원 운영하면 계약기간 연장 가능하지만 유치원 운영 중에는 계약기간 유지 필요 하기도 하다. 유치원 인가 요건 유지 중에는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5년마다 연장은 어렵다.

○ 유아모집 규정 예외 필요

처음학교로에서 조합원 우선 모집은 불가능하다. 이에 유치원 유아 모집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으로 하라고 하였다. 원장 재량으로 우선 모집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조합에서는 이사회 통해서 우선 모집 기준 설정). 유치원에 입학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우선 모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인가 전에는 유아모집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유아 모집과 직결된다.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예외로 하는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공영형 유치원 지원 안내 삭제 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재정지원의 한 가지 방법으로 공영형 유치원 재정지원을 협동조합 형 매뉴얼에 명시하면 모든 시도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기타

교육환경평가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점도 기술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마을공 동체 사업을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다) 경북

(1)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현재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1개 설립을 인가한 상태이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이후, 해당 법인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검토 후 인가를 승인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교육청과의 소통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고, 운영자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경북 구미의 경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초기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학부모조합원들의 참여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동조합형 유치 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설립 비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 이 부족하여 사회적기업신청도 알아보았으나, 유치원은 불가능하며, 비영리로 운 영해야하므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울산)

가) 울산

현재는 운영하는 원은 없으나 문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2〉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시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설립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 관련 업무를 지원청에 거의 권한을 위임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추진	경기	 교육청의 입장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 안들이 제한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해야 함. 공동육아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 간의 간극 해소 필요 협동조합이 아니라 유치원 설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함.

구분	시도	내용
1 =	742	- 자가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 내실화가 더 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신설한 유치원에서는 부관 설정을 통한 원장 자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할 필요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경북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 교육청과의 소통이 어렵고, 운영자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운영이 어려움 수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 학부모조합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실질적인 운영 불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설립 비용이 무엇보다 중요
비추진	울산	- 현재는 운영하는 원은 없으나 문의가 있는 상황

나.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경북)

가) 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겸직 여부에 대한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학교법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장과 원장의 겸직이 현행법상 가능한 구조이다. 유치원 3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하였다. 원장이 이사장을 겸할 경우, 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매뉴얼에 정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경기

(1)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첫째, 유치원 설립을 신청한 모두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설립 계획서 신청 전 교육환경평가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하였다.

둘째, 설립 계획서 신청 시 법인과 조합의 재산 운용방식이 다르므로 재산 명세 및 재산확보계획서 양식을 조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설립인가서 신청 시 조합 출자금, 조합비 등 예산 재원에 따른 예산서 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관공서 임대 설립일 경우, 교사·교지에 대한 필요 서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관공서 사용허가 공문, 입금 내역서, 체육장 면적 완화시 관할청 사용동의서 등).

다섯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할 때, 사회적협동조합만 만들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협 동조합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철학이 중요하고,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 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 법인운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은 원장과 교사가 담당하고, 조합 운영은 학부모가 해야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밝 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 경북

학부모 주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위한 조합 결성 추진 시, 교육청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미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에 유형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장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낯설기 때문에 컨설팅과 연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울산)

가) 울산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워 매뉴얼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쉬운 용어로 자세히 설

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러 권으로 나누어 그림을 동반한 매뉴얼이면 더 좋겠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3〉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겸직 여부에 대한 내용 반영이 필요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추진	경기	 유치원 설립을 신청한 모두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 계획서 신청 전 교육환경평가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 설립계획서 신청 시 법인과 조합의 재산 운용방식이 다르므로 재산 명세 및 재산 확보계획서 양식을 조합에 맞게 수정할 필요 설립인가서 신청 시 조합 출자금, 조합비 등 예산 재원에 따른 예산서 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관공서 임대 설립일 경우, 교사·교지에 대한 필요 서류들이 보완되어야 함. 사회적협동조합만 만들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 교육과 법인운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은 원장과 교사가 담당하고, 조합 운영은 학부모가 해야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	
	경북	- 학부모 주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위한 조합 결성 추진 시 컨설팅과 연수가 반드시 필요	
비추진	울산	- 쉬운 용어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러 권으로 나누어 그림 동반이 필요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 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1)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경북)

가) 서울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체될 경우를 대비해 재원생의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컨설팅이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나) 경기

(1)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공공기관 임대 시 고려해야 할 위치, 교육환경평가 여부, 시설기준, 임대비용 등 공공기관의 협조없이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산을 위해서는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협업 매칭이나 공모를 통해 임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설립 비용 부족 해소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 케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조합 설립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조합유치원 설립을 원할 경우, 비리 여부, 행정제재 여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지원할 별도의 지원센터가 필요하나, 1-2개 유치원을 위한 센터를 교육청 단위에서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사립, 유치원, 협동조합의 3가지 층위를 아우르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처음 설립부터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 재정지원, 컨설팅, 교육의 근거가 없으며, 조례 및 시행 규칙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임대의 경우에도 영구임대가 아니므로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 이음터 임대는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영구임대 구조는 아니라고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임대 TO 확보, 대출지원제도 확대, 컨설팅 확대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경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유아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홍보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울산)

가) 울산

가장 시급한 것은 유치원, 교육청의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연수라고 하였다. 수요자, 공급자, 지원자 모두 이해해야 현장에서 업무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핵심참여자들이 모두 개념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에 연수를 해주기를 바 란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4〉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 하고 싶은 점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체될 경우를 대비해 재원생의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이 필요 -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컨설팅이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함.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의견
추진	경기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협업 매칭이나 공모를 통해 임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초기 설립 비용 부족 해소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이 필요 조합 설립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 사립, 유치원, 협동조합의 3가지 층위를 아우르는 센터가 필요 초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시스템이 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 재정지원, 컨설팅, 교육의 근거가 없으며, 조례 및 시행 규칙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공공기관 임대의 경우에도 영구임대가 아니므로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 공공기관 임대 TO 확보, 대출지원제도 확대, 컨설팅 확대 등이 절실하게 필요
	경북	- 유아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
비추진	울산	- 유치원, 교육청의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연수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교육부 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에 연수를 해주기를 바람.

라.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경북)

가) 서울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모든 시·도 교육 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경기

(1)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첫째, 협동조합형 유치원 신설 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임대를 받지 못하면 진행하지 못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할 때 건물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데, 일반인이 공공기관 임대장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청과 교육청의 협의가 없이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임대를 공고해주는 방법 등이 있어야 협동조합형 유치원 시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조직과 컨설팅 및 연수체계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기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들이 겪는 경험으로 실질적인 지원 조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시청은 유치원이 관할이 아니니 교육청에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담당 장학사가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잘 알기 어려운 구조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하였다.

다) 경북

현재 업무 담당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도입 초기 후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러한 점들이 공영형 유치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게 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관심보다 공영형 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서, 교육청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에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초기 설립시 지원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어,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내용이 초기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는 운영자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울산)

가) 울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부의 의지라고 하였다. 교육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17 개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컨설팅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련자가 모여 협의회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먼저 운영해본 시도의 사례 발표도 들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점이 많은 정책이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현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5〉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모든 시·도 교육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수 등이 필요
	경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 또는 사협 대표들의 의견
추진		- 공공기관 임대를 공고해주는 방법 등이 있어야 협동조합형 유치원 시도가 가능 - 지원조직과 컨설팅 및 연수체계가 선제되어야 함.
	경북	-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에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초기 설립 시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칫 운영자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음.
비추진	울산	- 교육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17개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컨설팅을 해야 함.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련자가 모여 협의회도 필요. - 먼저 운영해본 시도의 사례 발표도 들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추진 필요

3. 매입형 유치원

- 가.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 1)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울산) 가) 서울

사립유치원 시설 규모가 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하여 매입형 유치원의 공립전환후 민원이 발생하였고, 시설공사(기간, 추가 개·보수 등)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시설공사의 경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리모델링 공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하였다. 아파트에서 단독이 아니라 공유지분인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단독으로 못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원과 시설공사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와 매입형 유치원 근무 교직원들의 불만족 민원 발생하였음.(교실 크기, 급식실 위치 [지하], 강당 위치[지하], 외부 놀이시설 부족이 주요인임. 매입형 유치원은 평균 7학급, 연면적 1,342.93㎡ (교육부 기준 1,782㎡)임.

3월 개원 후 방학 중 공사로 인한 유아수용을 위한 대체 공간 부족, 의무시설(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화장실 남녀 미구분, 소방(스프링쿨러) 미설치, 석면 제거 미실시 등의 시설공사의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사립유치원 중 운영이 잘되지 않거나 시설이 열악한 유치원들이 매입형 유치원에 공모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공립기준에 맞는 규모의 유치원을 구하기 어렵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용여건 및 시설여건 등 기준에 미흡한 유치원들이 점차 많아졌다고 하였다. 건물의 용도가 섞여 있는 경우는 미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기하기도 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동의와 사전협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감정평가 후 포기하겠다는 유치원을 달래서 4월에 개원하였는데,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민감하므로, 감정평가 절차를 앞으로 당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경기

경기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추진 기조 또는 목적은 단설유치원 부족 지역, 공립 취학률 낮은 지역, 단설유치원 용지 확보 어려운 지역에 공립선호도 등을 고려한 배치여건과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2019년 14 개, 올해 6개원 선정 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단설유치원이 집중된 곳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안 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설유치원이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 매입형 유치원을 많이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평가 항목의 배치와 시설여건 고려 시 특히 배치여건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시설에 대한 다소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 교직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매입형 유치원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리 종사원 민원이 많은데, 조리실이 가장 협소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와 도의원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이다. 그러나 배치여건을 고려하여 성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 김포 00유치원은 공립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다. 사립일 때 원비 부담이 높아 보내지 못했던 학부모들이 공립전환 결정 후 전원 희망 유아가 늘었고, 이번 유아 모집시 유아 승계율 99%로 공립유치원 전환 만족도 매우 높았다.

반면 시행착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설립자가 학부모 반대로 선정과정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학부모 반대는 학부모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19년 매입형 유치원 도입 첫해 용인 000 유치원은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대와 설립자의 변심으로 철회된 사례이다. 올해 추진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철회한 다른 1개 유치원은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확약 체결 시점에서 포기한 사례이다. 사립유치원은 매각 시 금액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 비공개는 어렵고, 경험상 행정절차 진행 전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선정 절차는 교육청에서 진행하지만 세부절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구조이다. 확약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확약을 하지 않는다. 경기에서는 신청을 철회한 유치원에는 감정평가 수수 료를 부담하도록 하였고(원래는 교육청 부담), 차년도 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 였다.

한편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교육부의 교부금 점검에서 부지와 건물 외에 입목죽 및 놀이시설은 모두 제외하였다(고정시설물 포함해서 매입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비용 반영을 안하고 있다). 또한 건물 안에 학원, 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청 시부터 제외하였고,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단독건물 동일 소유주는 올해는 신청을 받아주었는데, 공동명의는 제외하였다.

〈표 Ⅲ-3-1〉 심층면담: 경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례

심층면담: 경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례

경기도는 단설도 신축하면서 매입형 유치원도 타 시도에 비해 대규모로 추진하여 2019년 추진 시 84개 유치원 신청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이 경기도에 1000여개인데 인 가기준 10학급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였는데도(250여 개), 그 중에 30%가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한 것이다. 당초 목표는 15개였으나 선정위원들이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84개 중 9개원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하여 6개원을 추가 선정하였다. 이 중, 용인의 1개원이 학부모 반대를 이유로 철회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불만도 작용하여 철회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정책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의 방향은 다소 시설이 열악해도 배치 여건 상 공립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안산 지역에 매입형 유치원을 많이 선정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안산의 국공립 취학율은 16.7%로 경기도 공립 취학율 평균 29%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안산은 택지조성계획도 없어서 단설 설립이 어려운 지역이다. 작년에 용인에 3개원, 올해 안산에 3개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시군별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매입형유치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경영을 못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배치 상황을 보고 단설이 필요한 곳에 매입형 유치원을 배치한 것이다.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건물가보다 부지 가격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12학급 기준에 130억원(부지+시설)정도가 들어가는데, 매입형 유치원

은 평균 49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에 훨씬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40-60억이고, 리모델링비는 10억 전후인데, 리모델링비를 합쳐도 단설유치원 신축 비용 보다 저렴한 것이다.

□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학부모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

작년에는 학부모와 협의 없이 설립자 매입형 유치원을 임의로 신청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올해는 학부모 협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게 하였다.

□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폐원 유치원 제외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폐원 또는 폐원 예고한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이유로 폐원을 보류한 사립유치원들도 있었다. 또한 입학 연기, 설립자 임의 폐원한 유치원들은 모두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서 엄격하게 제외하였다.

□ 교실 확대 리모델링은 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리모델링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현지 실사를 가게 되는데, 2월까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므로 대규모 공사를 하기 어렵다. 이에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이 급식실로 가장 공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간이다. 또한 교실 면적도 공립은 66제곱미터이지만 사립 평균은 50제곱미터로, 교실 확대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여 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중투 기준의 변화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의 선정일정표에서 중투는 100억에서 300억으로 변경되어 앞으로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형 유치원은 자투에만 해당될 것이다.

□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 강조 필요

자주 하는 질문에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을 시설여건 또는 배치여건을 고려한 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교재교구 승계 부분 삭제 필요

교재교구 승계해주는 시도는 없다. 공립 원장 및 교사들은 사립 교재교구 활용 거의하지 못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국공립 신설유치원의 기준으로 내부비품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재교구 승계는 아예 매뉴얼에서 삭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 감정평가액에 리모델링비, 입목죽 등 제반 비용 포함 필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가 산정할 때, 교육부 교부금 산정에서 입목죽, 에어컨, 놀이기구

를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시설비, 리모델링비도 교부금 포함 안되고 시도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 의사결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협력으로

대규모 리모델링은 방학 기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 협조를 도출해내야 한다. 돌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주변에 단병설 유치원 없는 곳은 공사가 어려울 수 있다.

다) 부산

부산의 경우, 설립자 소유의 단독 부지 내 2개 건물로 각각 등기된 경우 매입형 유치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설 및 입지가 양호한 사립유치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설립자 단독소유 건물 내 학원이 있는 경우 매입형으로 선정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이나 입지가 양호하지 않은 유치원을 선정하게 되면, 공립 대비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유치원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실 면적이 안 나 와서 정원을 적게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설립자가 선정 과정에서 중도 포기 시 제 재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립도 원아 모집 끝났는데 중도 포기해서 학부모 민 원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협약 체결 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경남

경남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공모 시 원아가 많고 운영 잘되는 유치원은 잘 안들어오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으며, 특정 구 및 시에 원아가 몰려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탈락하는 경우 모집 공고문, 공문 안내 등에 확정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학부모 등에 대한 신뢰 훼손,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손실 발생 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매입이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파손 등의 유지보수비로 인하여 과다 유지보수비 발생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선 선정 예정 유치원의 중도 포기로 인해 매입 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감소, 후순위 후보 유치원 선정이 필요해지는 등의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의 고용문제 미해결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 광주

광주의 경우, 2020년 3월 2개원 개원을 목표로 매입을 추진하였는데, 13개원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교육청이 선정한 2개원 중 1개원에 대해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실외체육장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문제, 대피로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되어 최종 1개원이 선정된 바 있다고 한다.

광주의 매입형 유치원은 2013년 개원 유치원으로 시설적인 문제는 크게 없었으나, 교사 변경에 따른 재원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2021학년도 매입은일시 보류 중이며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후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추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교직원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바) 울산

울산의 경우, 2019년 매입형 유치원 2개원이 선정된 이후, 최종 확정 전까지 유치원별 토지 및 건물 등 대장을 통해 확인 결과 2개원 중, 1개원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1개원 선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매입형 유치원 모집공고에서 운영 뿐 아니라 폐원한 유치원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반발이 매우 커서 이후 모집공고에서 폐원한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매뉴얼에는 폐원한 유치원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을 승계해야하고, 공립유치원으로 학급 편성시 시설여건 기준으로 학급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인가 및 편성학급으로 유지해야하기 떄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럴경우 유아 임시 배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학급을 늘리기 위해 증축을 한다면 증축비용이 매입 비용과 맞먹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매입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전북, 대전, 강원, 경북, 대구, 인천) 가) 전북

전북의 경우, 현재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도내 유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만2세 이하 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 대비 0세아 수 $\triangle 50$ %), 도시개발구역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이외에는 공립유치원 신설 수요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이후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국정과제 목표인 40%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만 국공립유치원 이용율이 40% 이하이고 다른 지역은 공립유치원 이용율이 100%라는 것이다.

셋째, 도내 사립유치원 여건상 공립단설유치원과 비슷한 규모(부지면적, 교지면 적 등)의 사립유치원이 없다는 것이다(단설유치원 대지 면적을 3-5천 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2천 제곱미터 이하).

셋째, 사립유치원 매입비 외에도 특수학급·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기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설 신축비용 100억원 이상, 매입형은 50-60억원이지만 리모델링비를 합하면 단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북의 경우, 폐원 및 소규모 유치원의 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매입형 유치 원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나) 대전

대전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타시도 사례 추진

상의 부작용(고용승계, 추진과정상 매입가격 등 불만, 매매계약 기준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부재, 행·재정적 낭비, 선정기준 및 공정성 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매입 후 6학급 규모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을 가진 사립유치원은 총 9개원에 불과하고,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사립유치원도 대부분 원아수 100명 이상 운영이 잘되는 유치원으로 매각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였다.

현재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 휴폐원 중인 유치원에서 폐원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매입형유치원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도 충원이 안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기에는 타당성이 부 족하고, 특혜 여지가 있으며, 재정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유치원에 준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수반되므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 추진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입형 유치원을 비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강원

강원도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강원지역 특성상 소규모 유치원 비중이 높아 매입형 유치원 기준에 맞는 유치원이 부족하여 매입형 유치원 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유치원이 소규모라 면적 기준을 안 넣 고 인가기준만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통학로에 개인 사유지, 농지가 섞여 있는 유치원들이 많아 매입형 유치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많다고 하였다. 2019년 매입형 유치원 공모 후 최종 선정된 유치원이 없었으며, 2020년은 추진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라) 경북

경북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내 226개원 사립유치원 중 교육부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유치원은 10 개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취원대상아 수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북의 경우, 2017년 70,049명에서 2021년 61,646명으로 취원대상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2020년 정원충원율은 67.9%로, 취원대상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지역도 75.1%로 정원 여유가 많은 상황이다. 개발지구 등 원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 단설유 치원 설립 타당성이 낮은 상황이다. 단설설립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보할 만큼 유아 수용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므로 매입을 추진할 사유가 부족하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개발지구에 유치원 용지 확보가 가능해져 현 도심지역보다 개발지구를 위주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셋째, 사립유치원 폐원 사유는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한 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실제 취원대상아 수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더라도 실제 타당도가 낮은 상황이다.

넷째, 문제가 많은 유치원의 경우 매입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주민 갈등,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있는 유치원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매입형을 추진하게 되면 해당 유치원들이 공모할 것이고, 이런 유치원은 선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선정 사유에 대해 또 다른 민원·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진할 타당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마) 대구

대구에서는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여 단설 신축과 비용 차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 반대 및 내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 인천

인천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원도심의 유치원들의 운영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편으로 공영형 유치원 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하였다. 안전문제 및 리모델링 과다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2〉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 사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

(표 III-3-2) 매입병 유시권 성색 추진 시 성공 또는 실패 사데, 시행식오를 겪었던 사데		
구분	시도	내용
추진	서울	 사립유치원 시설 규모가 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하여 매입형 유치원의 공립전환후 민원이 발생. 시설공사(기간, 추가 개·보수 등)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 공유지분인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단독으로 못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 공립기준에 맞는 규모의 유치원을 구하기 어렵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용여건 및 시설여건 등 기준에 미흡한 유치원들이 점차 많아짐. 건물의 용도가 섞여 있는 경우는 미선정하는 것을 원칙 학부모들의 동의와 사전협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감정평가 절차를 앞으로 당기는 것도 필요
	경기	 경기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추진 기조 또는 목적은 단설유치원 부족 지역, 공립 취학율 낮은 지역, 단설유치원 용지 확보 어려운 지역에 공립선호도 등을 고려한 배치여건과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단설 유치원이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 매입형 유치원을 많이 선정 평가 항목의 배치와 시설여건 고려 시 특히 배치여건을 더 중요하게 판단 설립자가 학부모 반대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학부모 반대는 학부모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철회한 다른 1개 유치원은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확약 체결 시점에서포기한 사례 경험상 행정절차 진행 전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깔끔. 신청을 철회한 유치원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 차년도 신청자격을 박탈고정시설물 포함해서 매입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비용 반영을 안 하고 있음. 건물 안에 학원, 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청 시부터 제외, 단독건물 동일 소유주는 올해는 신청을 받아주었는데, 공동명의는 제외
	부산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시설이나 입지가 양호하지 않은 유치원을 선정하게 되면, 유치원 구성원들의 불 만이 높음. 교실 면적이 안 나와서 정원을 적게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설립자가 선정 과정에 서 중도 포기해서 학부모 민원 발생, 이런 이유로 협약 체결 시 구속력이 필요
	경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적 편차가 발생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탈락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 대한 신뢰 훼손,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 매입 이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파손 등의 유지보수비로 인하여 과다 유지보수비 발생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 선정 예정 유치원의 중도 포기로 인해 매입 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감소, 후순위후보 유치원 선정이 필요해지는 등의 사례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의 고용 문제 미해결로 인한 민원 발생

구분	시도	내용
	광주	 교육청이 선정한 2개원 중 1개원에 대해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실외체육장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문제, 대피로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되어 최종 1개원이 선정 개원 유치원으로 시설적인 문제는 크게 없었으나, 교사 변경에 따른 재원생 학부 모들의 반발이 있었음. 교직원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사례
	울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1개원 선정을 취소한 사례 모집공고에서 운영 뿐 아니라 폐원한 유치원도 포함하여 진행. 모집공고에서 폐원한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음. 기존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을 승계, 공립유치원으로 학급 편성시 시설여건 기준으로 학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
	전북	 - 유아 인구수가 지속적 감소, 특히 만2세 이하 유아 수가 급감, 도시개발구역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이외에는 공립유치원 신설 수요가 크지 않음 - 2022년 이후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국정과제 목표인 40%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도내 사립유치원 여건상 공립단설유치원과 비슷한 규모(부지면적, 교지면적 등)의 사립유치원이 없음. - 사립유치원 매입비 외에도 특수학급·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측 - 폐원 및 소규모 유치원의 문제가 더 심각
	대전	- 타시도 사례 추진상의 부작용(고용승계, 추진과정상 매입가격 등 불만, 매매계약 기준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부재, 행재정적 낭비, 선정기준 및 공정성 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
비추진	강원	- 강원지역 특성상 소규모 유치원 비중이 높아 매입형 유치원 기준에 맞는 유치원 이 부족 -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통학로에 개인 사유지, 농지가 섞여 있는 유치 원들이 많아 매입형 유치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많음.
	경북	- 선정 기준에 적합한 유치원은 10개원에 불과 - 취원대상이 수 감소했기 때문 - 미선정 사유에 대해 또 다른 민원·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진할 타당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근거가 부족
	대구	-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여 단설 신축과 비용 차이 거의 없기 때문 - 학부모 반대 및 내부 조정이 어렵기 때문
	인천	- 원도심의 유치원들의 운영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편, 안전문제 및 리모델링 과다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나.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1)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울산) 가) 서울

첫째, 매입형 유치원 교실 최소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전환 시 기존 유치원에 비해 학급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실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기준면적이 있으나, 실당 면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사립유치원 최소 인가기준, 80+3N).

둘째, 안전진단보고서에 관한 매뉴얼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 이상 매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책임기술자 자격증,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치에 대한 재령계수값 기재 여부, 철근 탐사상 데이터 등에 대한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 경기

첫째,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감정평가 금액 등의 불만족 사유로 철회 시, 패널티 부분을 매뉴얼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매입형 유치원 신청시학부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매뉴얼에 담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다) 부산

부산의 경우,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 완화 방안을 요청과 감정평가 재평가에 대한 규정 마련, 분원 설치 기준 마련,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 포함 등이 매뉴얼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중도포기 유치원 제재 근거 마련(협약사항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둘째,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 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셋째, 대지권 비율 유치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공유부지에 대한 사권 기준 완화(행안부 협의 과정 필요)

넷째,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

다섯째, 매입형 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개정 희망)

여섯째, 시설 리모델링 예산도 교부금에 포함하여 교부

라) 경남

경남의 경우, 매뉴얼에 포함해야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주로 선정 기준과 매입계약서에 관한 표준 계약서 예시 필요, 또한 중도포기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 예시

둘째, 매입 계약서 작성에 따른 표준 계약서 예시

셋째, 기존 매뉴얼의 내용 중 확약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중도포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중도 포기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마) 광주

매입형 유치원의 식기류, 에어컨 등 사용가능한 비품 구매 절차 방안 마련될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바) 울산

첫째, 감정평가 이후, 매입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사업 철회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매뉴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 측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철회하고 싶다고 할 경우, 해결책이 미약하다고 하였다.

2) 매입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전북, 대전, 강원, 경북, 대구, 인천) 가) 전북

매입형 유치원 추진 사례 예시(모범사례, 문제점 등)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대전

매뉴얼에는 시도별 시행착오, 시행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개별 사례 중심의 해소사례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매입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시 설 면적 기준도 제시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강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무실, 행정실 등 관리실 부재로 여유 공간 여부 확인하거나,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라) 경북

특히 교부금 지급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설립 관련 예산의 교부금 지급 여부는 사업 시행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실제 매입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과 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비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학교신증설 교부금 점검에서 유치원 신증설정책과 교부금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부금 담당 부서와 협의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마) 대구

매뉴얼에는 교부금 재원의 명확화, 우수 사례 예시, 평가 서식의 (실제 배점표등)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3〉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매입형 유치원 교실 최소기준을 필요 - 안전진단보고서에 관한 매뉴얼 안내 필요
추진	경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감정평가 금액 등의 불만족 사유로 철회 시, 패널티 부분을 매뉴얼에 강조할 필요 매입형 유치원 신청시 학부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매뉴얼에 담을 필요

구분	시도	내용
	부산	 중도포기 유치원 제재 근거 마련(협약사항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대지권 비율 유치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공유부지에 대한 사권 기준 완화(행안부 협의 과정 필요)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 매입형 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개정 희망) 시설 리모델링 예산도 교부금에 포함하여 교부
	경남	-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 예시 - 매입 계약서 작성에 따른 표준 계약서 예시 - 기존 매뉴얼의 내용 중 확약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중도포기 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중도 포기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광주	- 매입형 유치원의 식기류, 에어컨 등 사용가능한 비품 구매 절차 방안 마련 필요
	울산	- 평가 이후, 매입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사업 철회를 할 경우, 이를 제재 및 규제 근거 필요
	전북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사례 예시(모범사례, 문제점 등) 등이 포함될 필요
비추진	대전	- 매뉴얼에는 시도별 시행착오, 시행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개별 사례 중심의 해소사례 등이 포함될 필요, 매입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시설 면적 기준도 제시 필요
	강원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무실, 행정실 등 관리실 부재로 여유 공간 여부 확인하거나, 증축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
	경북	- 교부금 지급 기준을 명시할 필요
	대구	- 매뉴얼에는 교부금 재원의 명확화, 우수 사례 예시, 평가 서식의 (실제 배점표 등) 구체화가 필요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1)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울산)

가) 서울

첫째, 매입형 유치원 공모 자격 확대에 관한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 사립유치원 중 공립유치원 시설규모(6학급[연면 적 1.782㎡]이상, 건축년도 10년 이하)에 맞는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10개 미만으

로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공모자격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매입형 유치원 매입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 교부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수준을 40%까지 확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리모델링 비용까지 교부하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경기

첫째, 매입형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 절감과 짧은 기간 안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학급 규모, 평균 단설유치원 설립비는 117억이나, 매입형 유치원 매입비는 48억 정도이다. 그런데, 올해 5.19.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향후 개발 사업시 유치원 용지도 무상공급 대상이 될 경우 건축비(약74억)와 매입형 유치원 매입비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교부금 산정시 매입 유치원의 부지와 건물만 반영하여, 놀이시설, 입목죽, 시설 리모델링비 등의 비용(억~수십억)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부 차원에서 교부금 반영시 리모델링비도 포함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다) 부산

부산의 경우, 첫째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중도 포기유치원에 관한 제재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공유재산심의, 사립학교설치조례 개정, 공립유치원으로 유아모집 등 제반 행정절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 불만 등 사유로 유치원에서 매입형 유치원 중도 포기 시 제재할 근거가 없어 행정 신뢰가 하락하고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를 살펴보면, 매입형 유치원 중도 포기 시 매입선정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대상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차후 매입형 유치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매매계약 체결 전 매입형 유치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유치원에서 중도 포기할 경우 행정절차를 다시 무효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립유치원으로의 유아모집 문제로 인해 학부모 민원

이 발생하고, 공유재산 시의회 심의, 교명 선정 및 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 등 기이행된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도 포기유치원 제재근거 마련으로 매매 계약금(10%) 지급 등 협약사항을 구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설립자 소유부지 내 분리된 건물 및 대지권 비율 유치원에 관한 매입형 유치원 선정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현재 설립자 소유의 단독 부지 내 2개 건물로 각각 등기된 경우 매입형 유치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지침이다. 그런데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부지 내 2개 건물(유치원, 학원)이존재하는데, 유치원 측에서 학원 건물도 동시 매입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공유 부지 유치원은 대지권 비율이 사권이설정된 유치원으로 볼 수 있어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동일 부지 내의 다른 건물이 유치원이 아니라는 제약으로 활용성이 뛰어난 유치원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한정된 신청 요건으로 매입형 유치원 제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산의 경우, 교육환경 및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매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공유부지 (대지권 비율) 유치원의 신청 제한으로 유치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교부금 100% 교부). 또한 「공유재산업무편람」(행안부)상 공유부지에 대한 사권 기준 재검토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대지권 비율 유치원 사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기존 유치원 교직원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이다. 현재 부산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공립으로 전환 시 기존 교직원 고용 승계가 안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해 시의회 질의가 있다고 하였다.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유치원 측 불만으로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변동 등 특정한 사유 발생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이다. 매입형 유치원 신청 대상을 6학급 이상(단설유치원 가능 규모) 유치원으로 하여 소규모 유치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리) 경남

경남의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 이후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현실적인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육부 자문 시 자문 의견 제시가 아닌 매입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결과 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매입형 유치원 접수 시, 학부모 동의서 및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등 학부 모, 교직원 동의서가 있어야 매입형 유치원 접수가 가능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매입 건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 매입 건물 노후 연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여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사립유치원과 상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것을 사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것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선정 이후 중도포기 유치원, 전년도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섯째, 휴원 중인 유치원도 매입가능하게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매입 이후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에 맞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개원 준비 기간이 짧은 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휴원 중인 유치원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리모델링 시간,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작년에 공모 신청했던 유치원이 입지가 좋아서 선정하려고 하니 특혜 의혹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 광주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팔고, 매

매 후, 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언론사들이 유치원 매매 후, 타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시 먹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 다. 이에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유치원을 매매한 설립자의 경우, 향후 몇 년간 사립 유치원 설립 및 매매 금지조항 등의 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 울산

유치원의 교지는 아니라도, 실제로 유치원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 토지가 있다면, 시도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고 매입 금액에 대한 교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대다수가 특수학급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공립유치원으로 개원 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은 필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시설 설치비가 상당하게 들어가 특수학급을 매입형 유치원에 포함하려면 리모델링등에 대한 금액교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2) 매입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전북, 대전, 강원, 경북, 대구, 인천) 가) 전북

매입형 유치원 추진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철회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대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교사, 체육장 등 기준면적 협소)할 필요가 있으며, 리모델링 등 매입형 유치원 추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강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기능을 단순 자문이 아니라 승인 등의 기능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기능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라) 경북

첫째, 매입형 유치원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가 많이 되었으나, 실제 성과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공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부모 만족도, 실제 매입한 지역의 취원율 증가 결과 등 긍정적인 방안에 대한 공유는 부족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긍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셋째, 매입형 유치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사례의 공유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마) 대구

현재 유치원 교지, 교사에 대해서만 매입하여, 매입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목국, 외부 주차장 등)임에도 교부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바) 인천

매입형 유치원을 실제 운영 시 그 성과 및 학부모 만족도를 발굴할 필요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4〉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

구분	시도	내용
	서울	- 매입형 유치원 공모 자격 확대에 관한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 필요 - 매입형 유치원 매입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 교부를 요청
추진	경기	 매입형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 절감과 짧은 기간 안에 공립유치원 설립을할 수 있다는 점임. 매입 유치원의 놀이시설, 입목죽, 시설 리모델링비 등의 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하여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교부금 반영 시 리모델링비도 포함 필요
	부산	-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중도 포기유치원에 관한 제재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설립자 소유부지 내 분리된 건물 및 대지권 비율 유치원에 관한 매입형 유치원 선정 근거를 마련

구분	시도	내용
		- 설립자 소유부지 내 등기상 분리된 건물도 유치원 건물과 동시 매입하여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가능하도록 기준 완화할 필요 - 기존 유치원 교직원 고용 승계 문제,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필요 -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필요
	경남	- 매입 이후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교육부 자문 시 자문 의견 제시가 아닌 매입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결과가 필요 - 매입형 유치원 접수 시, 학부모 동의서 및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등 학부모, 교직 원 동의서가 있어야 매입형 유치원 접수가 가능케 할 것을 제안 - 매입 건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 - 선정 이후 중도 포기 유치원, 전년도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가 필요 - 휴원 중인 유치원도 매입가능하게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작년에 공모 신청했던 유치원이 입지가 좋아서 선정하려고 하니 특혜 의혹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광주	-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팔고, 매매 후, 타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음.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유치원을 매매한 설립 자의 경우, 향후 몇 년간 사립유치원 설립 및 매매 금지조항 필요
	울산	 유치원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토지가 있다면, 시도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고 매입 금액에 대한 교부가 필요 특수학급을 매입형 유치원에 포함하려면 리모델링 등에 대한 금액교부 필요
	전북	- 추진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철회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
비추진	대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교사, 체육장 등 기준면적 협소) 할 필요 - 리모델링 등 매입형 유치원 추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강원	-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기능을 단순 자문이 아니라 승인 등의 기능으로 변경 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기능 다양화가 필요
	경북	- 학부모 만족도, 실제 매입한 지역의 취원율 증가 결과 등 우수 사례(실제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 필요
	대구	- 매입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목죽, 외부 주차장 등)임에도 교부금에서 제 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
	인천	- 학부모 만족도, 실제 매입한 지역의 취원율 증가 결과 등 우수 사례(실제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 필요

라.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1)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울산)

가) 서울

서울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한계로 인해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개발사업자 기부채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설립모형 검토 중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분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분원' 형태의 유치원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경기

첫째,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등 운영 사항 등을 적극적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정원충족률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립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 부산

부산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선제조건이라고 하였다.

라) 경남

경남의 경우, 첫째, 매입 이후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수요가 높은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적어 사립유치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유인책 등의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 울산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립 수

준의 시설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부가 시도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매입형 유치원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매입형유치원 추진 시, 공립 수준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학급 및 연면적이필요하는 점을 교육부 차원에서 제시해준다면, 소규모 사립유치원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바) 전북(매입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

유아 수가 급감하는 지역에서는 설립보다 폐원, 소인 학급 등이 더욱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매입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대전, 강원, 경북)

가) 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폐원, 공립유치원 충원율은 확대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 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이 더 많아지는데 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폐원전 매입형 유치원을 퇴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낭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기 설립된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다양화보다도 유아모집 확대,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에컨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 원 원장을 비롯한 교원의 유아모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교원역량강 화, 공교육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강원

지금까지의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만족도 혹은 성공사 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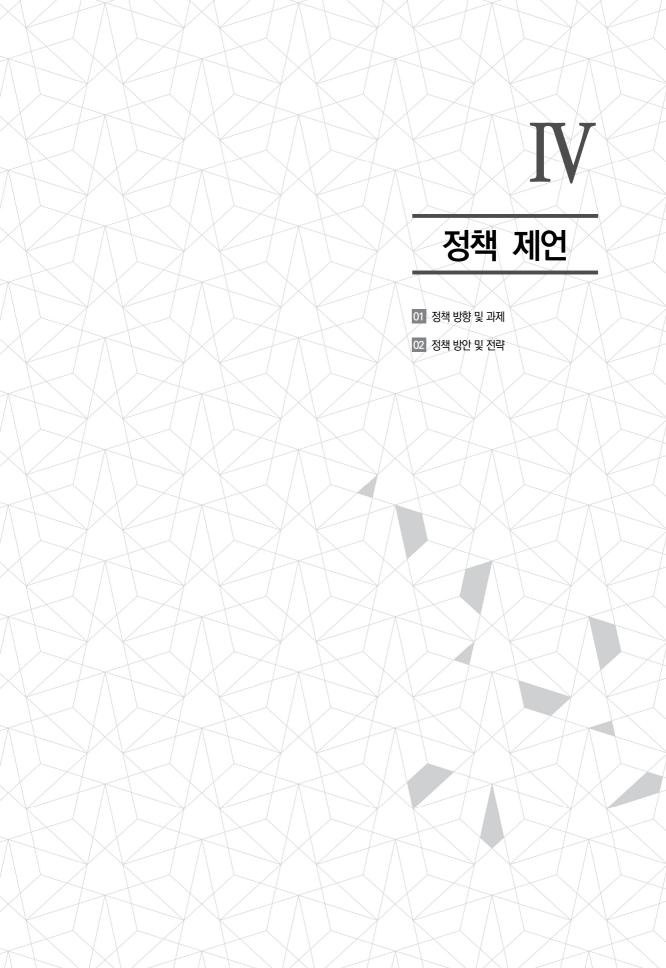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운영 방식이 공영형 유치원과 유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치원을 사업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유치원은 매입형으로 추진하기보다 폐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실시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가 생겨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폐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치원 3법 등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인가 및 폐쇄 인가에 관한 매뉴얼도 다시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5〉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구분	시도	내용
추진	ᄹ	-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개발사업자 기부체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설립모형 검토 중이며, 교육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분원'형태의 유치원 법제화가 필요
	경기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등 운영사항 등을 적극적 수용할 필요가 있음.
	부산	-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이 선제조건
	경남	- 매입 이후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문제 해결이 필요 -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수요가 높은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적어 사립 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유인책 필요
	울산	- 교육부가 시도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매입형 유치원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 시해줄 필요
비추진	전북	- 유아 수가 급감하는 지역에서는 설립보다 폐원, 소인수 학급 등이 더욱 심각한 문 제로 대두
	대전	 유아 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이 더 많아지는데 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기 설립된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다양화보다도 유아모집 확대,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원도심 지역의 소인수 유치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인수 유치원 활성화 방안,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방과후 돌봄시간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 기 선정된 유치원도 평가에서 통과될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강원	- 지금까지의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만족도 혹은 성공사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경북	- 유치원을 사업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유치원은 매입형으로 추진하기 보 다 폐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Ⅳ. 정책 제언

1. 정책 방향 및 과제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의 목적 을 기반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

본 연구에서 공영형 유치원 시행 이후, 우수 사례는 일종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은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로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원비 절감 효과를 부모들이 체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하는 지점들은 많다. 법인 전환의 어려움 해소, 개방 이사 및 이사회 구성의 문제,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시 시설 조건 확인 필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 등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현재 서울, 대구, 강원, 광주에서 진행 중에 있다.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에도 공영형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이 특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이다.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이 사립유치원들의 공영형 유치원 지원을 꺼리게 하는 거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특교 3년 한시지원 이후 교육청과 유치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법인 전환 후 폐원이나 매각이어려울 것을 전망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 종료 이후의 재선정의 문제와 재정지원

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 공영형 유치원 확대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기초를 닦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투자해야할 미래학교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설립 초기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현재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유아모집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조직도 부족하고, 자가건물로 시작하기 어려운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세운 법인이 임대유치원을 운영하는 구조는 유치원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수 있는 조건을 내포하고도 있다고도 볼 수있다. 또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조합법인의 운영과 유치원 교육의 분야가 적절하게 분리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이되어야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원장은 조정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와 교사회, 부모회를 이끌어나가면서도 사립유치원을 유능하게 이끌어가야 하므로,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발기인에 반드시 부모와 교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 학교를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들로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유치원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이므로, 매뉴얼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정보완될 지점이 많다. 예컨대 아직도 공공기관 임대에 필요한 행정서류들의 보완, 조합 출자금과 조합비와 같은 예산서 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일반 유치원과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도 중요하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컨설팅 구조와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초기 대출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주 사업인 유치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격으로는 어디에서든 대출이 쉽지 않아, 유치원 설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 설립자들은 사협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구체적인 컨설팅 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립학교를운영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협이 운영하나, 결국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설립인가 시 보다 교육관과 재정보유 현황 등에 관한 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국공립 다양화 정책 중, 매입형 유치원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이유는 사립유치원의 국공립전환 때문이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매입형 유치원의 장점이자 우수 사례는 단설유치원 수요가 있음에도 위치와 비용의 측면에서 불가능할 때,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시도별 인구구조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에 대한 체감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높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립유치원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하고 시설공사의 기간과 개보수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국공립화되면서 기존의 사립유치원 체제에서 승계되지 못하는 지점에서 불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여건과 지역배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는 배치여건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도 있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구성원들의 합의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감정평가 에 대해 불만을 품고 중도포기하는 설립자의 경우에 패널티 규정을 강화하여 행정 적 낭비를 줄일 필요도 제기된다.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는 시도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성 시비,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민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리모델링시 교부금 지원의 어려움 등도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다.

2. 정책 방안 및 전략

이상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기반하여 정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방안

가-① 정책방안 1.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허들을 낮추기

- ① 추진전략 1-1. 법인 전환에 대한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매뉴얼 상세화 필요
 - 법인화 기간, 법인 전환시 필요한 서류,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1-2.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예외 규정 신설 필요
 -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3개년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입 총액의 2분의 1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해야하므로, 유치원만을 설립·경영하려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함.
 - 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임.
- ③ 추진전략 1-3. 개방이사 추천은 교육청과 유치원이 상호인력풀을 활용하며 시행
 - 교육청과 유치원이 상호 협력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 적합한 이사를 선임 하여 유치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2 정책방안 2. 교직원 노동자성 존중과 근무여건 개선

- ① 추진전략 2-1. 교직원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8시간 근무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매뉴얼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음.

가-③정책방안 3. 교직원 노동자성 존중과 근무여건 개선

- ① 추진전략 3-1. 교직원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8시간 근무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매뉴얼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매뉴얼에 담을 필요가 있음.

가-④정책방안 4. 유치원용 매뉴얼 개발 및 매뉴얼 서식의 예시 포함

- ① 추진전략 4-1. 유치원용 매뉴얼 개발 필요
 -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유치원들의 참여와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유치원용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가-5 정책방안 5. 부서 협력 구조 관련

- ① 추진전략 5-1. 관련 부서의 협력을 높여 공영형 유치원 사업 추진을 내실화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시도교육청 내 여러 부서의 협력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관련 부서의 협력을 높여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 들 필요가 있음.

가-6 정책방안 6. 정책 홍보

- ① 추진전략 6-1. 공영형 유치원 정책 홍보
 - 공영형 유치원의 개념, 특성, 추구하는 가치, 공영형 유치원의 성과, 학부모 만족도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함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방안

나-1 정책방안 1. 초기 설립시 적극적 지원

- ① 추진전략 1-1. 매뉴얼에 초기 설립 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과 팁 추가
 - 초기 설립시 대출, 인가기준에 관한 인식 부재, 서류 보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뉴얼에 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임대를 하거나, 초기 설립을 위한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조 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추진전략 1-2. 공공기관 임대 규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 필요

- 공공기관 임대 규정에 필요한 행정서류의 명확한 구비를 위해 매뉴얼에 세부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2 정책방안 2. 교육청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① 추진전략 2-1. 교육청-지자체-설립자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청-지자체-설립자 간의 협력을 할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교육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의 연계와 지원이 필요함.

② 추진전략 2-2. 공공기관 임대를 위한 공간 확보 정보 제공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임대 공간 확보의 경우, 교육청이 취학권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관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매칭, 공 모 과정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제안할 수 있 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함.

나-③ 정책방안 3. 당사자 연수 및 컨설팅 체계 마련

① 추진전략 3-1. 유치원 설립·인가과정에 관한 컨설팅 필요

- 유치원 인가 및 설립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육청, 사협 지원 조직과 연계된 컨설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② 추진전략 3-2. 협동조합형 유치원 컨설팅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함. 유치원 설립 전, 설립 초기, 설립 이후의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인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③ 추진전략 3-3.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들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관한 이해를 돕고, 컨설팅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나-④ 정책방안 4.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린 유치원 운영 모델 확산하기
- ① 추진전략 4-1. 생태, 평등, 협력과 연대의 주요 가치를 살린 유치원 운영 모델 운영 및 연구
 -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사협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 가치와 모델이 아직 낯설고, 초기 단계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 방식을 충분히 홍보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② 추진전략 4-2. 정책 홍보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홍보하여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권을 높이도록 함.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안

다-1 정책방안 1.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에 대한 표준성, 공정성 강화

- ① 추진전략 1-1.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성 강화
 - 매입 건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복합건물 기준에 대한 기준, 폐원 유치원 포함 여부, 매입계약서 작성에 따른 표준 계약서 예시 제시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지침이 필요함.
- ② 추진전략 1-2.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
 - 매입형 유치원 관련 의사결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라 는 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③ 추진전략 1-3.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강조
 -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학부모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의사결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협력으로 가능케 하도록 함.
- ④ 추진전략 1-4. 감사관 제도의 활용

- 매입형 선정위에 감사관을 포함하거나, 해당 유치원이 감사에 걸렸는지 여부를 자격요건에서 확인하고, 공고문에 제시하는 방법 통해 선정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

다-2 정책방안 2. 유아. 교직원. 교재교구 승계 조치 협의

- ① 추진전략 2-1. 교재교구 승계관련 매뉴얼 삭제 필요
 - 교재교구 승계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2-2. 사립교직원들의 비승계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 승계는 어렵지만, 일자리 제공하거나 임용고시를 보는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권장하도록 함.
 - 다-③ 정책방안 3. 매입형 유치원 리모델링은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 ① 추진전략 3-1. 교실확대 리모델링은 급당 인원 조정 등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교실 확대 리모델링은 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제안 될 수 있음.

다-4 정책방안 4. 법제도 마련

- ① 추진전략 4-1.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
 - 6학급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유아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추진전략 4-2. 공공기관 임대 관련하여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 필요
 - 공공기관 임대 관련하여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형 유치원 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5 정책방안 5. 매입형 유치원 관련 정책 홍보 확대

① 추진전략 5-1.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정책 홍보를 통해 정부정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오해를 줄여나가야 함. 특히 학부모 만족도, 실제 매입한 지역의 취원율 증가결과 등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다-6 정책방안 6.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질 개선

- ① 추진전략 6-1.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운영 유지를 통한 사립의 장점을 반영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통학차량 등 운영사 항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다-7 정책방안 7. 관련 연구 및 성과 공유 관련

- ① 추진전략 7-1. 매입형 유치원 성과 연구 필요
 - 지금까지의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만족도 혹은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매입형 유치원을 실제 운영 시 그 성과 및 학 부모 만족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매입형 유치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사례의 공유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다-8 정책방안 8. 중도포기자 관련 제재 조항 강화

- ① 추진전략 8-1. 매입형 유치원 확약 이후,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
 - 기존 매뉴얼의 내용 중 확약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중도포기 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중도 포기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참고문헌

교육부(20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25).

교육부(2020).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충남교육청.
-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이유진 외(2020). 국공립다양화 매뉴얼 3종 세트(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수탁보고 2020-1).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이유진, 이송지, 김미애, 김경태, 주수원, 김영연 (2020).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교육부, 세종특별자 치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임재홍, 강남훈, 김진석, 김용섭, 박창현, 김태현(2015).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최은영, 박창현, 송신영(2016).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매입형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를 위해 시도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 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일 시: 2020년 월 일

장 소: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교육(지원)청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2. 직위	(예시: 학교설립과 주무관)					
3. 연령	만세 4. 성별 ①여 ②남					
5. 최종학력 및 전공	①대학교 졸업(전공:) ②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대학원전공)					
6. 연락처	핸드폰(줌회의시 혹시 연락가능한 번호)					

Ⅱ. 주요 면담 내용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 대상]

- 1. 귀하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추진할 때(공모, 선정, 운영 등) 경험하셨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입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 대상]

- 1. 현재 매입형 유치원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 기준에 맞는 유치원 부족 등)
- 2. 2021년도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매입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또는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공영형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를 위해 시도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일 시: 2020년 월 일

장 소: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교육(지원)청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2. 직위	(예시: 학교설립과 주무관)					
3. 연령	만세 4. 성별 ①여 ②남					
5. 최종학력 및 전공	①대학교 졸업(전공:) ②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대학원전공)					
6. 연락처	핸드폰(줌회의시 혹시 연락가능한 번호)					

Ⅱ. 주요 면담 내용

[공영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 대상]

- 1. 귀하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추진할 때(공모, 선정, 운영 등) 경험하셨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	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어	H떤 것들	이 있을까요	?		

[공영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 대상]

- 1. 현재 공영형 유치원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2021년도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공영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또는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록 3.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국공립 다양화-협동조합형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를 위해 시도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일 시: 2020년 월 일

장 소: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교육(지원)청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2. 직위	(예시: 학교설립과 주무관)					
3. 연령	만세 4. 성별 ①여 ②남					
5. 최종학력 및 전공	①대학교 졸업(전공:) ②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대학원전공)					
6. 연락처	핸드폰(줌회의시 혹시 연락가능한 번호)					

Ⅱ. 주요 면담 내용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시·도교육청 대상]

- 1. 귀하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을 추진할 때(공모, 선정, 운영 등) 경험하셨 던 성공 또는 실패사례,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추진 시·도교육청 대상]

- 1.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2021년도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4,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내용 또는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90485-80-7